2026

건설공사 품질관리 민원사례집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TENT

1.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 Q.1-43
2. 품질관리계획서 ····· Q.1-15
3. 품질시험계획서 ····· Q.1-8
4. 품질관리비 ····· Q.1-81
5. 품질관리 통합운영 ····· Q.1-9
6. 시험실 및 시험장비 ····· Q.1-19
7.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 Q.1-15
8. 품질관리자 배치 ····· Q.1-25
9.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 Q.1-2
10. 품질시험 기준 ····· Q.1-29

11.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 Q.1-16

12.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 Q.1-10

13. 자재품질 관리 ····· Q.1-23

14. 콘크리트 ····· Q.1-45

15. 가설기자재 ····· Q.1-33

16. 철강 품질관리 ····· Q.1-13

17. 부실벌점 ····· Q.1-4

18. CSI(품질) ····· Q.1-9

제1 장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대상

Q.1-43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개정관리	작성·변경 감리단 검토·확인 시공사 발주자승인 절차 적정성 검토 주체 승인 절차

질문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작성·변경 시, 감리단이 검토·확인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시공사가 직접 발주자 승인만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적정절차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 · 확인을 받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개정관리	회사명 변경 사업자 번호변경 품질관리계획서 기 제출·승인 변경(개정) 여부 재검토 재승인 필요 여부

질문

회사명(사업자번호 포함) 변경 시, 기존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승인받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개정)하여 재검토·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할 때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확인받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계약 문의	물품·공사 혼합 계약

질문

공사와 물품이 혼재된 계약의 집행 관련 문의

민원 응답

ㅇ「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 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 (가.「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위의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자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기계 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적용 공종 범위 토목 공사 건축 공사 기계 공사 전기·통신·설비공사

질문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기준이 토목·건축공사에만 적용되어 중급 품질 관리 대상 공사가 되는지, 또는 기계 공사 등 기타 공사종류에도 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인 경우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목, 건축공사가 아니더라도,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이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계약 문의	상업건물 대수선 공사 용도변경(주차시설·오피스텔) 건설공사 해당 여부 건축물 용도 변경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배치대상 여부

질문

상업건물을 주차시설 및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공사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품질관리기술인 배치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배치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과 품질관리기술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동 법령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및 해체 공사로 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공사가 상기 기준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면 동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공사가 상기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대한 검토기관인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대수선 공사	대수선 리모델링 건설공사 해당 여부 품질관리적용대상

질문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여부(대수선, 리모델링 대상)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1.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 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3. 총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령상 건축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건축 공사업의 업무 내용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건설 공사가 상기 기준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품질 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검토·승인 기관이 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승인 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발주자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CM)대상공사 발주청 공사 민간공사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 적용범위 법적용대상

질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의'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가 발주청 공사에 한정되는지, 또는 민간 등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공사도 포함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동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의해 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 사업관리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은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민간 공사이더라도, 영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인 경우와,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발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참여 공동사업 사업 시행자 발주청 해당 여부 법적 지위 판단 협약서

질문

LH가 민간참여 공동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인 경우, 법적 '발주청'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 및 LH가 발주청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에 LH 건설관리지침 적용이 명시되었으면 해당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 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 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기관으로 정하고 있어, LH가 상기 기준에 따른 발주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국토 교통부고시 제2025-105호)은 건설 기술 진흥법 제59조 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이 건설 사업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를 공사계약 문서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 계약 특수 조건 및 산출 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LH와 민간사업자는 공동시행자나 건설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해당 국토 교통부가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과 LH 건설 사업 관리 지침서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공동 민간사업자는 건설 사업자이기에 해석은 사업 주체별 업무 협약서에 따라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발주자	발주자

질문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발주자'의 정의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 공사 품질 관리 업무 지침」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발주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과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 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분리발주	품질관리 대상공사 산정 총공사비 산정 분리 발주공사 전기 공사 통신 공사 소방 공사

질문

품질 관리 기술인 배치를 위한 품질 관리 대상 공사 산정 시 분리 발주된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에서 공사규모별로 품질관리 대상공사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기술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전기공사 등에 대한 품질관리인 및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분리발주	동일 발주자 분리 발주(4개현장) 품질관리계획 계약 요구 법정적용 대상 아님 품질관리 대상 공사 등급 중급/고급/특급 등급적용기준

질문

동일 발주자가 4개 현장을 분리발주한 공사에서 법정 적용 대상은 아니나 계약상 품질관리 계획 수립을 요구한 경우,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중급·고급 중 어떻게 적용하는지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할 경우, 4개 현장의 공사 금액을 합산하여 특급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각 공사별 금액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사 규모에 따라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질의하신 4건의 건설공사가 각각 분리발주 되어 품질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각 공사별 공사규모에 따라 대상공사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수립 대상공사 아님 도급내역 반영 계획 수립 의무 여부 계획 제출 발주자승인 계약상 요구 사항

질문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급내역에 해당 계획이 반영된 경우, 건설 사업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제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 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 등록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품질 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 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 조 제 1항에 의하면,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대상공사를 1.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대상인 건설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 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3. 해당 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 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를 1.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 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3.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수립 해당 공사임을 알려 드리며, 이 경우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착공 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제출 오류 계획서 착오 제출 인허가기관 통지 품질시험계획으로 전환

질문

품질 시험 계획 수립 대상 공사임에도 착오로 품질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 착공 이후 이를 인허가 기관에 통지하고 품질시험계획 대상 공사로 변경하여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1.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 사업 관리 대상인 건설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 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공사, 3. 해당 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 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품질 시험 계획 수립대상공사를 1.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 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사, 3.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영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영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변경 시에도 수립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을 품질시험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수립시와 동일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대한 검토·승인권한은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 및 발주자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승인기관과 협의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중급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총공사비1,200억원기준적용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의무

질문

민간공사로서 지하 2층~지상 10층, 공사 금액 1,200억, 연면적 100,000m² 규모의 공사가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와, 해당하지 않을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공사를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로 판단되나, 이는 해당공사의 규모, 건축물의 성격, 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민간투자 사업 하나의 사업(분산현장) 지역분산(A·B·C) 총공사비 482.05억원 품질관리 계획 품질시험 계획 수립 대상 여부

질문

하나의 사업이지만 a · b · c 지역으로 분산된 민간투자사업(총공사비 482.05억)의 경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지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공사를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를,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며, 시행령 제89조 제1항 외의 건설공사로서 같은 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중급대상 공사 사업주와의 계약 품질관리계획 수립

질문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건진법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나, 금액과 연면적을 기준으로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인 경우 중급 품질관리 대상으로 중급1인, 초급1인, 시험실 18m²를 확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 5에 의하면,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급·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등급 상향 품질시험 계획→ 품질관리 계획 전환

질문

총 사업비 증액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 여부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총공사비는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공사 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당초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2에 따라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 금액 상향에 따른 품질관리 기술인 추가 배치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분담이행 방식 공동도급 장기차수계약 A사(100억) / B사(50억) 공사금액 기준 품질관리대상 공사 등급 초급 품질관리 대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 등급 판단 기준

질문

분담 이행방식 장기 차수 계약에서 A사(100억), B사(50억) 각각의 공사에 대해 공사금액 기준으로 초급 품질관리 대상인지, 중급 품질관리 대상인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1호 및 2호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1. 공동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할 수 있으며, 2.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별로 품질관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공사가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에서 전체공사에 대해 통합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품질관리대상공사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공사가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수급인 별 공사금액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제조업 공장 신축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대상 공사 등급 판단 다중이용건축물

질문

연면적 5,000m² 규모의 제조업 공장 신축공사가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인지,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인지에 대한 질의 및 해당 공장이 다중 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인 경우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 영 제89조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인 경우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급은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 총 공사금액, 품질관리계획 대상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제1호·제2호 미 해당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 대상공사 등급 판단

질문

공사 금액 800억 규모의 건설공사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3호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해당 공사가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m^2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조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공사의 구분은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계약상 품질관리계획 수립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금액·연면적 기준충족 품질 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중급1인+초급1인 시험실기준(18m²)

질문

계약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 해당)로서 금액·연면적 기준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인 경우, 중급 1인 + 초급 1인 배치 및 시험실 18m² 확보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특급 및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영 제8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급·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급 품질관리대상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1-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기준 연면적660m²이상 건축공사 신축공사 리모델링 천정마감교체 보수공사

질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기준인 '연면적 660m²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천정 마감 교체 등 단순 보수공사도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공사를 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같은 법령상 건축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상기기준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기관이 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건축물 리모델링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공 품질시험계획 수립

질문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전기공을 포함한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전체공사금액이 3억일 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 영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 질의상의 공사 중「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인·허가 대상 아님 전문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적용대상 여부 건설공사 범위

질문

인·허가 대상이 아닌 공사라도 총공사비 2억 원 이상인 전문 공사의 경우,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니면서, 별도의 허가·인가·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건설공사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인·허가기관)이 없는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수립 대상공사	축사 건설사업자 미시공 건축물 연면적660m²이상 품질시험 계획 수립 대상 적용대상여부 계획수립 제외 대상 공사 건설공사 해당여부

질문

축사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660m² 이상이면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이 제외되는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경우에 의하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인 경우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을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상의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조경식재공사 및 철거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심사 주체	규정 차이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심사 주체 발주청 인·허가기관

질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간 규정 차이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심사 주체가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인지, 발주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하면 영 제90조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내용을 적정,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시공자,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을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자(발주청)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연면적	연면적 660m²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건설공사 해당여부 신축·증축·대수선 보수공사 포함 여부

질문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2항의 '연면적 660m²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물'과 '건축공사'의 구체적인 의미 및 적용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축물, 건축공사의 의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연면적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00m²) 증축공사 증축면적(100m²) 품질 시험계획 수립 대상 적용기준면적

질문

건축 증축 시 연면적의 산정에 대한 기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존 건물에 증축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건물 상부 등에 증축함에 따라 본 구조물에 하중 등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기존 건물 측면에 증축하여 본 구조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으며,

- 만약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 시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고, 측면에 증축할 때 증축할 건축물의 연면적만 산정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2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입찰 공고일	민간 투자사업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 시점 경과 규정 법령 적용 기준일

질문

민간 투자사업의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부칙 제2조의 입찰 공고일 기준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제54조 개정 규정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 이후 입찰 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이 제안된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 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무관청은 제3자 제안공고의 절차를 거쳐서 타 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함께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입찰공고와 제3자 제안공고 모두 청약의 유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판례도 입찰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이에 따른 입찰은 청약이며, 낙찰은 계약의 승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다317 판결).

-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자 제안공고일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부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전문건설공사	전문건설 업체 네일 식생 옹벽 공사 관급자재 포함 계약금 30억원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시험실 설치 별도 배치 여부 기존 건축공사 인력·시험실 공동 활용

질문

전문건설업체가 수행하는 네일 식생 옹벽공사(관급자재 포함, 계약금 30억)에 대해 품질관리 기술인 및 시험실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지, 또는 기존에 계약된 건축공사의 인력 및 시험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및 품질관리 기술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전문 공사와 건축공사가 별도로 발주되어 진행되는 공사인 경우,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도 별도로 수립되어 운영되므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시험실과 품질관리 기술인도 별도로 배치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전문 건설 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건축공사 포함 여부 복합공사 공사비 산정 범위

질문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 공사'의 의미가 전문 공사 자체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전문 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1.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 공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영 제89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여부와 관계없이 귀 건설공사의 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해당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조경공사	토목 공사 (약 90억) 조경 공사 분리발주 품질관리등급 분류 총공사비 산정 조경공사비 포함 여부

질문

토목공사(약 90억)와 조경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 품질관리등급 분류 시 조경공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비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를 공사 규모별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상공사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건설 기술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의하신 토목, 조경공사가 분리 발주된 별 건의 건설공사라면, 각각의 공사별 공사규모(총공사비, 연면적 등)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품질관리 대상공사 구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조경공사	조경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적용 대상 여부

질문

조경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관련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조경식재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경공사업으로 발주된 공사가 조경식재공사일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공사이나,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일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품질시험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차수공사	총공사비 380억 장기 계속 공사 1차분계약(30억)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 수립 범위 부분계약 vs 전체공사

질문

총공사비 380억의 장기 계속 공사에서 1차분 30억만 계약된 경우, 1차분에 대해서만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면 되는지, 또는 전체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공사분에 대하여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착공시기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 우선 시공분 가설사 무실 착공 여부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제외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질문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사에서 우선 시공분(가설사무실 등)을 착공으로 보지 않아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간에도 법정 품질관리기술인 배치를 모두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상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기술인의 배치시기 및 배치인력 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착공 승인	착공 필증 발급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간주 여부 실질적 검토·심사

질문

인허가기관의 착공필증 발급이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계획서에 대한 실질적 검토·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1. 적정, 2. 조건부 적정, 3. 부적정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착공필증"이 해당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총공사비	총공사비 100억원 기준 관급 자재비 포함여부 예정가격vs낙찰금액 적용기준 금액 분리 발주 공사비 기계·전기·통신·소방공사

질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기준인 총공사비 100억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즉 도급비 및 도급자·발주자 관급 자재비 포함 여부,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 기준 적용 여부, 그리고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분리발주 공사비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건설 기술인을 정하고 있으며, 이때 총 공사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질의하신 공사(건축, 토목)와 기계 공사 등의 공사가 별 건의 공사로 분리발주되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이 별도로 수립될 때는 각 공사건별로 총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하신 공사 중「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업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 법」에 따른 소방 시설공사 등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3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총공사비	품질관리 시설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총공사비 적용 범위 설계가/예정가격 관급자재 관급비 포함 여부

질문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기준 산정시 적용되는 총 공사비의 범위가 관급자재를 포함한 설계가(또는 예정가격) 기준인지, 또한 관급자재비가 도급자 관급자재비만 해당하는지, 별도계약인 발주자(관급자) 관급자재 설치비 및 관급자재비 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총공사비'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모든 공사비로, 이때 총공사비는 공사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3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총공사비	총공사비 산정 설계·구매·시공(EPC) 전체금액 시공금액 100억 원 기준 적용금액 기준 총공사비 범위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에서 총공사비 산정 시 설계·구매·시공 전체금액(150억)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시공금액(약90억)만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에 따라 총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서 '총공사비'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취득 ·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사 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 금액으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4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총공사비	총공사비 범위 건축·토목·조경·설비공사 설비공사 분리발주 총공사비 포함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통신 전문공사 분리발주 대상 공사비 제외 여부

질문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총공사비 범위에 건축·토목·조경·설비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지, 또는 설비공사를 분리 발주하였으면 해당 공사비를 총공사비에서 제외하는지 및 전기·통신 등 전문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분리발주 대상인 경우, 해당 공사비를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시 총공사비에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비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 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축, 토목, 조경공사와 설비공사가 분리발주 된 경우, 건축, 토목, 조경공사와 설비공사를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고 각각의 공사가 영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나 기계설비나 그 밖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공사업 법에 따른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등은 '공사 예정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4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총 공사비	분리발주 폐기물 처리용역 총공사비 산정제외

질문

분리발주 된 폐기물처리 용역비도 총사업비에 포함 여부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시 총공사비를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중 분리발주 된 공사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총공사비 산정 시에는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4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대체 배치 초급기술인 2인 이상 등급대체 가능 여부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기준 상위등급 대체 하위등급 보완

질문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법정 배치 기준(고급 1인, 중급 1인, 초급 1인) 대신, 특급 1인과 초급 2인 이상으로 대체 배치가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는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이상,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기기준에 해당하는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 장 |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분류번호 1-4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하나의 계약 건축허가 분할(4건) 품질관리 등급 기술인 배치 기준 계약 기준 적용 허가(개별공사)기준 적용 시험실 규모

질문

하나의 계약을 4건으로 나누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품질관리 등급 및 기술인 배치기준을 계약 기준으로 적용할지, 허가(개별 공사) 기준으로 적용할지, 이에 따라 시험실 규모 및 인원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별로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또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승인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장

품질관리 계획서

Q.1-15

제2 장 | 품질관리계획서

분류번호 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개정관리	승인 요청 공문 제출 의무여부 승인 절차 변경승인 기준 경미 변경vs중요 변경 행정 절차 보고vs승인 구분

질문

품질관리계획서 개정 시마다 인·허가기관에 별도로 승인 요청 공문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사감독자 등의 검토 · 확인을 받고 착공 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획 수립시와 동일하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인 경우 미리 인·허가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공동도급	공동 도급 (주계약자 관리 방식) 품질관리대상 공사 등급 공사금액 산정 주계약자 타 주계약자 공사 금액 공사비 합산 여부

질문

공동 도급(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사 수행 시, 품질관리 대상공사 등급 산정시 타 주계약자의 공사 금액까지 합산하여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 방식의 공사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및 관련 문서의 운영은 1. 공동 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2. 공동 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공동수급체가 제4조 제7항 제1호와 같이 공사를 수행하여 품질 관리(또는 시험)계획서를 대표사가 통합작성 한 경우,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품질 관리 대상공사를 구분하여야 하며,

- 제4조 제7항 제2호와 같이 공사를 수행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한 경우, 수급인별로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 장 | 품질관리계획서

분류번호 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계획 검토	감리 검토 계획 개정 필요

질문

착공을 하고 나서 특별한 개정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감리에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에 대한 검토를 받아 품질관리계획서를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번호 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대상 변경	품질관리계획 대상 아님 착공 시 계획서 제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이중 제출 인·허가기관 변경 제출 품질시험계획 대상 전환 계획 변경 가능 여부

질문

품질관리 계획 대상이 아닌 현장에서 착공 시 품질관리 계획서와 품질시험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인·허가기관에 변경 제출하여 품질시험계획대상으로 전환 가능한지, 또는 제출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계획 대상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2항에 의하여 품질관리 계획 수립 대상공사와 품질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상기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 질의하신 건설 공사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잘못 제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시와 동일하게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검토권자인 발주청 또는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서면 통보	검토 결과 통보 서면통보 여부 묵시적 승인 명시적 승인 행정 절차 승인 효력

질문

인·허가기관이 품질관리계획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적정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서면통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제90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인 · 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관리 계획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2-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주체	민간공사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 절차 승인·검토 순서 인·허가기관 발주자 검토주체 / 승인주체

질문

민간공사에서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 계획 수립 시, 인·허가기관과 발주자 간 승인·검토 절차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와 각 단계별 시행 주체 (검토·승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 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에 의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제출 받은 인·허가기관(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인 경우)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인 · 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하며,

-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미리 인·허가기관의 심사를 받고, 인·허가 기관에서 심사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으로 확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승인서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 장 | 품질관리계획서

분류번호 2-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공동도급	품질관리계획 승인일 기준

질문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일 기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 계획 등의 수립 절차) ①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분류번호 2-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시험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 (상위 개념)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통합 작성 포함 작성여부 계획서 구성 방식

질문

품질관리계획서 내에 품질시험계획서를 포함하여 통합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에 의하면, 품질관리 계획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은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적절한 공정 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2-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시험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 내용 시험 횟수 시험실 배치도 시험실 규격 내용 누락

질문

품질관리계획 대상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 관련 내용(시험 횟수, 시험실 배치도, 시험실 규격 등)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 및 별표 1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 8.11에 의하면,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1. 적절한 공정 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계획(ITP)의 수립, 2. 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항목, 합격 판정 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책임자 역할, 3. 검증 시기, 장소 및 방법, 4.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입회 시기, 방법 등(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5.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방법, 6. 검사 또는 시험을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 및 결과 검토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2-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제외 항목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품질관리계획서 8.3 설계관리 설계관리 항목 작성 포함 여부 설계·시공 통합

질문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이면서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방식 공사에서, 품질관리 계획 작성 시 '8.3설계관리'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1호.) 별표 1, 8.3설계관리에 의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건설공사의 설계 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2-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적정성 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 작성 의무 여부 사용 의무 여부 의무사항 판단 보고 방법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지 제2호 서식(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표)의 작성·사용이 의무 사항인지 와, 의무일 경우 발주청 또는 사업 주체에 대한 보고 시기 및 보고 방법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청, 인허가 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때,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표는 발주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서식이 아니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0조에 의해, 발주자가 규칙 제52조에 따른 적절성 확인 시 활용하는 점검표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2-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차수공사	차수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차수별 제출 전체공사 기준 제출 횟수 승인 횟수 단계별 적용 여부

질문

차수 공사의 경우, 매 차수별로 품질관리 계획을 각각 제출·승인해야 하는지, 또는 전체 공사 기준으로 1회 제출·승인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수 공사인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 또한 공사 차수별 품질관리(시험) 계획에 대해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시험계획 및 횟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해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2-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책임 및 권한	조직도 업무 분장표 구성원 명단 포함 여부 인력 구성 정보 구성원 변경 계획서 개정

질문

품질관리계획서에 조직도·업무분장표뿐만 아니라 실제 구성원 명단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및 구성원 변경 시 품질관리계획서를 개정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 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영 제89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첨부문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공사감독자 및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질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해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2-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기술인 퇴직 충원 전 공백기간 배치 기준 미달 일시적 허용 여부 인원 변경 품질관리계획서 변경(개정)시점

질문

품질관리 기술인 퇴직 후 충원 전까지 일시적으로 배치 기준 미달이 허용 되는지 및 인원 변경 시 품질관리 계획서를 언제까지 변경(개정)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상,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미 배치 가능기간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2에 의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실정에 따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의 배치계획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를 받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 장 | 품질관리계획서

분류번호 2-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제도	이행 주체 품질관리기술인 프로젝트 전체 구성원 전부서 참여 공동 관리 책임 범위

질문

품질관리 계획이 특정 담당자만이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 및 부서가 함께 관리·이행해야 하는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1(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 3. 책임과 권한에 의하면, 시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서에는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 등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여 단위조직 및 공사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 장

품질시험 계획서

Q.1-8

제3 장 | 품질시험계획서

분류번호 3-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개정관리	품질시험계획 시험 횟수 임의 증대 계획 개정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 시험 횟수

질문

품질시험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과 달리 시험 횟수를 임의로 증대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의 시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 장 | 품질시험계획서

분류번호 3-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개정관리	시험실 위치 변경 시험실 이동 품질시험계획서 계획 변경(개정) 승인/재승인 변경 승인 필요 여부 경미 변경vs중요 변경

질문

시험실 위치를 변경(이동) 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서를 변경하여 별도의 승인(또는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 계획 등의 수립 절차) ①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건축법」 제25조 또는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품질시험계획서의 내용), 3. 시험시설,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험실 이동 시 시험실 배치 평면도를 포함하여 품질시험계획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승인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 장 | 품질시험계획서

분류번호 3-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관급자재	관급 자재 발주자 직접설치 품질시험계획서 포함 여부 시공사 관리 범위 품질관리 책임 시험·검사 대상

질문

발주자가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재 품목에 대해서 품질시험계획서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와 시험 및 검사는 해당 건설자재 및 부재를 사용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관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시험은 관급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시험은 도급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분류번호 3-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기계공사	기계분야 건설공사 건설 자재 품질시험 실시 여부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적용대상 자재 시험·검사 기준

질문

기계분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해서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 등록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기계분야의 건설공사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3 장 | 품질시험계획서

분류번호 3-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공사	총공사비 20억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레미콘 철근 사용량 소량 품질 시험 법정시험 기준 시험수행 의무 시험생략가능 여부

질문

총공사비 20억 규모의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레미콘, 철근 등 사용량이 적은 경우(수량)에도 법정 품질시험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인 경우, 상기 조항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 장 | 품질시험계획서

분류번호 3-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시험대상 항목 없음 품질시험계획 수립 의무 형식적 계획vs실질적 시험 품질시험실 설치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질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이지만 실제 품질시험 대상 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품질시험실 및 품질 관리 기술인을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 기술인을 공사 규모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 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대상공사인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시험실 및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 장 | 품질시험계획서

분류번호 3-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시험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 포함 범위 구성 내용 시험계획 세부 항목

질문

품질관리계획서 내용 중 품질시험계획의 포함범위 및 구성 내용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제90조 제1항에 의하면"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 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품질관리 계획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1. 적절한 공정 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계획의 수립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품질 관련 건설 기술인, 시험실 면적(배치도 포함) 및 시험 종류(횟수 등 포함)를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3-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계획서	차수공사	차수 공사 품질시험 계획 차수별 제출 전체 공사기준 승인 승인 방식 물량 변경 계획 변경(개정)

질문

차수공사에서는 품질시험계획도 차수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분에 대해 승인받고 물량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수 공사인 경우 전체 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최초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 또한, 공사 차수별 품질시험 계획에 대해 개정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시험계획 및 횟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해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품질 관리비

Q.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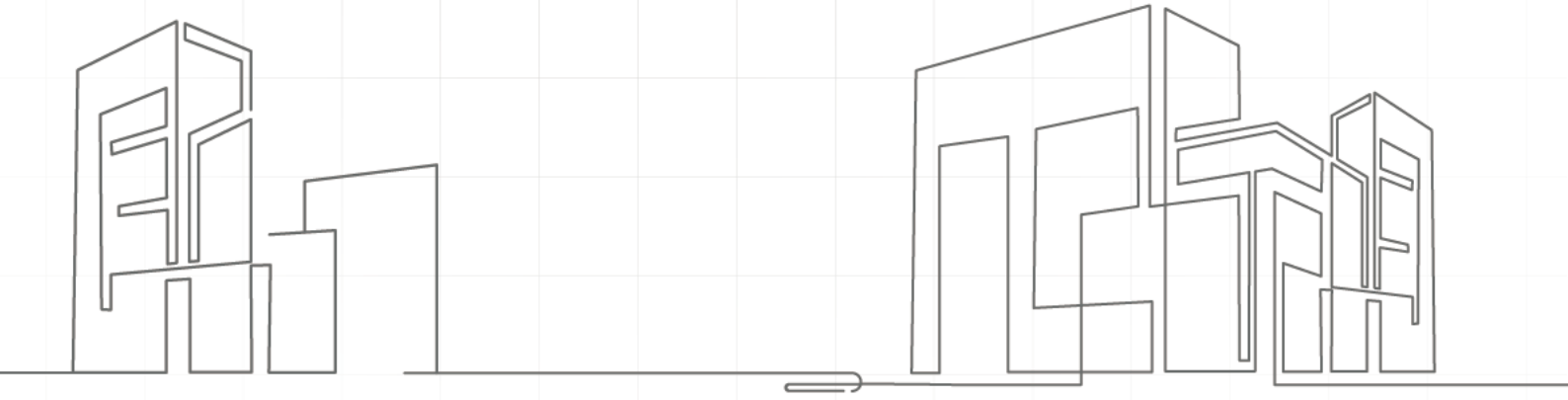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KS 인증제품	관급자재/사급자재 KS인증 제품 추가 품질시험 발주자 요구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요구 품질시험비

질문

관급 및 사급 KS인증제품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구로 추가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비를 품질시험비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 규모 및 중요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의 시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은 품질관리(시험) 계획의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과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KS 인증제품	하도급 업체 비KS 제품 품질시험 비용 비용부담 주체 원도급 업체 자재 승인 품질관리 책임

질문

하도급업체가 사용한 비 KS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비용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은 건설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원도급사)에게 의무화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의 계상은 발주자가 건설 사업자 등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 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공기 연장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인건비 산정 연장기간 적용 기준 기존기준 적용 여부 별도 기준 존재 여부 정산 기준

질문

공기 연장 시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고 인건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공기연장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을 정하고 있어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기간 동안은 건설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는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공기연장에 따른 배치 기준 및 인건비 산정 방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공사 중지 기간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유지 협의 계약금액 조정(공사중지)

질문

공사 중지 기간 품질관리 활동비 지급 관련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3.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는 공사 중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빙 가능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정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공시체 제작비	공시체 제작 시험비 산정 기준

질문

압축강도 시험이 1조(3개)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규정된 경우 공시체 제작비 또한 1개 기준이 아닌 1조(3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4에 명시된 '공시체 제작'에 대한 단위 산출량은 같은 지침 별표 2에 명시된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단위 산출량을 의미하고, 레미콘의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F 4009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해당 KS 규정을 살펴보면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개의 공시체 제작에 대한 단위 산출량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과태료	과태료 품질관리비 실비 정산 원칙 총액 입찰 내역 반영 의무 용도외 사용 금지

질문

총액 입찰공사에서 시공사가 품질관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발주자가 품질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에 의하면,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발주자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과태료	품질관리활동비 미 정산 시 과태료 여부 품질관리 활동비 정산 의무 실비 정산 원칙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 별도 계상

질문

발주청이 품질시험비만 정산하고 품질관리활동비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 품질관리활동비 미반영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여,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 시험비와,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관급자재	가설재 손료 vs 품질시험비 분리 중고 가설 기자재 성능시험 의무 품질관리비 실비 정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질문

건설 현장에서 중고 가설기자재에 대해 외부 의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에 신규 자재 손료로 반영되어 있을 때 해당 시험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별로 구분하면 발주청이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지급 자재(관급자재)와 시공자가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하는 사급 자재로 구분되며, 자재는 설계도서에 부합하는 규격과 품질을 가져야 하며, 당해 자재의 구매 전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부터 자재 공급원 승인을 득하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 아울러, 관급자재의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 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규정하고 있기에 시공사는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계약서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건설사업관리기술단)과 협의하여 공급원승인 여부를 판단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험 비용, 품질관리와 시험 및 검사는 해당 건설자재 및 부재를 사용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관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시험은 관급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및 시험은 도급자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관급자재	관급자재 품질시험비 실비정산원칙 외부공인 시험기관 의뢰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질문

시공사가 관급자재에 대해 외부 의뢰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해당 품질시험비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시험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 의뢰시험은 품질시험비 한도 내에서 실시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기타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실비 정산 비목변경 및 설계변경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 반영

질문

도급계약 내역서에 품질관리 활동비 대신 기타 품질관리비가 1식으로 계상되어 있고, 해당 비용이 품질 문서 관련 비용 및 품질교육훈련비로 구성된 경우 이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의하면, 2.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품질시험비와,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고 있어, 발주자는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할 때 동 구분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다만, 1식 단가 및 설계변경 등 건설기술 진흥법 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내역입찰 대상공사	실비 정산 원칙 공기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

질문

내역입찰 대상공사에서 품질관리 활동비 증액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 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험관리인(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초급 1인, 중급 1인이 배치된 경우, 시험관리인에 해당하는 초급 기술인의 인건비는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없으나, 중급 기술인의 인건비는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단가산출서 누락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계약조건 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내역입찰 대상공사	총액입찰공사 실비 정산 품질관리 활동비 비목 변경 사후정산 및 증빙 확인 낙찰금액 총액 유지 원칙

질문

총액(내역) 입찰공사에서 품질관리 활동비 기준에 없는 '월간활동 비용'이 반영된 경우, 감액 대상인지, 또는 총액입찰 특성상 낙찰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항목만 감액하고 총액은 유지한 채 사후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 품질관리 활동비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 2) 품질 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3) 품질 관련 교육·훈련비, 4) 품질검사비, 5) 그 밖의 비용'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월간활동비'는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품질관리 활동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총액입찰에서 해당 공사 금액의 조정 가능 여부는 동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내역입찰 대상공사	턴키 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일반 공사 품질관리비 원가계산서 계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운영 방식 적용 여부

질문

일반 공사와 같이 품질관리비를 원가 계산서에 계상하고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방법에 따른 적용 제외 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노임 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엔지니어링기술자(건설부문)

질문

품질관리 활동 비중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중 어느 협회의 노임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는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 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협회의 단가 모두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노임 단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제수당·상여금 포함 단가 이중 계상 금지 통상 임금 성격

질문

대한건설협회 단가를 적용하여 예정 가격을 산정할 경우, 기본급 외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포함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 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단가 모두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한건설협회 단가 적용 시 제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 여부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동 법령상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노임 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적용 실비 정산 원칙(산출기준 준수) 배치기간 및 기술 등급 확인 급여 명세서 제출 의무

질문

품질관리 기술인 인건비 정산은 실제 급여명세서 기준이 아닌, 원칙적으로 대한건설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노임 단가 기준으로 산정·정산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별표 6, 3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할 때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 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노임 단가	품질관리원 (대한건설협회 단가) 품질관리기술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단가) 간접 노무비vs기술서비스 대가 중복 계상 확인

질문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의 인건비 적용 시 품질시험비는 '품질관리원(시험 인력)' 단가, 품질관리 활동비는 '품질관리 기술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품질시험비에 포함되는 '시험 인력'의 단가에 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품질시험비 산출단 위량 및 단가 적용)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시험 인력의 등급별 노임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 노임단가) IV. 직종 해설에 의하면, '품질관리원'을"건설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을 보조하는 기능공으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시험 인력"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품질시험비에 포함되는 시험 인력의 노임 단가는 등급별 '품질관리원'의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품질관리 활동비에 포함되는'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의 단가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 1)의 비고에 의하여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관련 현장에서 대한건설협회의 단가를 적용할 경우,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 노임단가) IV. 직종 해설에 의하면, '품질관리 기술인'을"건설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품질 관리 활동비에 포함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노임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한'품질관리 기술인'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기관인 대한건설협회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노임 단가	통상임금 및 퇴직급여 포함

질문

퇴직 급여 충당금의 품질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 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 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퇴직급여 충당금 포함 여부는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같은 법령상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리모델링 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 리모델링 공사 품질시험대체 자재인증서 시험 생략

질문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라도 단순 리모델링 등으로 품질시험을 자재인증서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별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 없을 것이나,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해당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관리비 또한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2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방화문 시험	품질 시험비 비용부담 원칙 원도급사 하도급 업체 방화문 시험 외부출장 시험 시험비용 부담 주체 계약 미반영

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시험비용은 원도급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지(현장 반입 없이 실물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시험소에서 실시하는 방화문 시험의 경우) 및 품질시험비가 발주자와의 계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도급사가 자체 품질관리를 위해 이를 시행하면서 하도급업체와 계약하여 선지급 후 기성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발주자와 계약한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여 품질관리(시험을 포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외부 시험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 계약에 따라 하도급업자가 품질시험비를 지급하고, 하도급 기성금 청구에 반영하여 원도급자가 지급한다 하더라도, 품질관리비는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원도급자가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분리발주	분담이행방식 품질관리비 배분 설계변경 및 비목신설 공동수급체 운영 협약

질문

A+B사(중급 1인, 초급 1인)와 C사(초급 1인)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A+B사에는 품질관리활동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C사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을 때, 품질관리활동비를 분담사별로 각각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 방식에서 품질관리 계획서 및 관련 문서의 운영은 1. 공동 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2. 공동 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A+B사와 C사가 조직별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품질관리(시험)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품질관리비 또한 별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산출단위량 기준	외부의뢰 시험비 공표 수수료 실비 정산 단가 현실화

질문

품질관리비 산출 근거가 설계도서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1호 가목에 의하면,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 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설계도서란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 공사의 설계 등 용역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 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산출단위량 기준	품질시험비 실비 정산 원칙 외부기관 수수료 기준단가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비교견적 및 공표 단가 활용

질문

품질시험비를 업무지침 별표 4(단위량 기준)로 산정한 금액과 실제 시험비(외부기관 수수료·견적 등) 간 차이가 큰 경우, 그 차액을 누가 부담·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1호 가목에 의하면,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 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표 6 제2호 가. 품질시험비에 의하면, 품질시험비에 포함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출단위량 기준을 토대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비 산출 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시험비 산출 시 적용하는 인건비, 공공요금은 별표 4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무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 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 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품질시험비는 상기 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외에도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 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출되며,

- 질의하신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의뢰 시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산출단위량 기준	외부의뢰 시험비 공표 수수료 실비 정산 단가 현실화

질문

현장 시험과 외부 의뢰시험 모두 품질시험비를 산출할 때, 외부 의뢰 시험비를 단위량 산출 내역 금액으로 수행하는지, 또는 지역별 고시된 시험 수수료(또는 실제 견적) 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1호 가목에 의하면,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사금액 산정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지역별 고시된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 · 공립 시험기관 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어, 상기규정에 따라 국·공립시험기관인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등이 기준을 따로 정하여 품질시험·검사대행비를 별도로 고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이 별표4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산정이 어려워 품질시험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시장거래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조사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각 시험기관의 단가를 활용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번호 4-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실행 기간 기반 산정 품질관리계획 변경 승인 준비 및 정리기간 포함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질문

총 공사기간 72개월 중 48개월만 반영된 품질관리활동비 및 차량비에 대해,준비·비작업·정리기간 등 제외된 24개월의 품질관리비를 설계변경으로 추가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고 있으나, 적용 공사기간 등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령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금액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2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설계변경 당시 단가 설계서 누락 및 오류 협의단가결정

질문

누락 된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등)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경우 기존 단가와 신규 단가 중 어떤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1. 일반 사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설계 변경으로 인한 신규 품목의 단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동 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가 적용 방법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2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 설계 변경 반영 실제 투입 기간 인건비 및 시설비 산정

질문

누락된 품질관리 활동비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때 전체 공사기간 기준 (월 22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험성적서 등 실적을 기준으로 실제 투입 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품질관리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항목별 산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령상 공사기간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설계변경 관련 사항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2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품질관리 활동비 실정보고 여부 인건비 청구가능 여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

질문

품질관리 활동비를 실정보고 없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정보고가 필요한 경우 이전 미 청구 인건비를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비는 나. 품질관리 활동비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고에 따라 해당 항목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령 상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외에 질의하신 사항인 실정 보고 여부, 소급 적용 여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2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시료비용 청구	품질 시험비 시료 제공 비용 청구 여부 시료 채취 비용 시료 운반 비용 시험 준비 비용

질문

건설공사 품질시험비의 시료 제공 시 비용 청구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 기술용역 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 관련 내용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당사 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3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시험관리인력	관리인력 산출단위량 적용 제외 시험관리 인력 시험 인력 인력포함 여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력'의 산출 단위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별표4의 '시험관리' 인력과 '시험' 인력 모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 인력의 산출단위량은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시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 제56조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시에는 '시험관리 인력'에 대한 단위량 (별표 4의 시험관리)은 제외하고, '시험 인력'에 대한 단위량 (별표 4의 시험)으로 품질시험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3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시험기구 구매비용	시험기구 구매비용 시설비용 포함 여부 품질 시험비 산정 시험기구 손료 검정·교정비 시험 시설비

질문

시험 기구 구매 비용은 품질시험비 산정 시 시설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지 및 품질시험 수행 중 발생하는 시험 기구 손료, 시험에 필요한 시설 비용 및 검정·교정비는 각각 별도로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 중복을 고려하여 하나의 항목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비에 의하면,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 비용, 시험·검사 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 손료는 5)의 계산식 또는 품질시험비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 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시험 기구 구매 비용 등 시설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관해서는 같은 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3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시험비용 누락	누락 시험비 설계 변경 반영가능 항목 품질시험비 추가 반영 기준

질문

품질시험비 (맨홀 수밀 시험)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인건비·공공요금·재료비·장비 손료 외에 품셈에 따른 시험 기구 및 설치 인원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2호가 목에 의하면,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 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산출 기준 외에 질의하신 설치 인원이나 시험기구에 대한 추가 비용은 같은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별표 6, 1. 일반조건 다목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락된 품질시험에 관해서는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3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시험비용 누락	내역서 누락 시험 비용 설계변경(증액) 가능 여부 품질 시험비 반영 설계 누락·오류

질문

품질 시험 계획서에 포함된 시험 항목이 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해당 시험 비용에 대해 설계 변경을 통해 반영(증액)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1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3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시험실 운영 관리	시험실 운영 설계 변경 가능 여부 시험실 설치비 시험실 운영비 품질 시험비

질문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을 위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비가. 품질시험비에 의하면, 품질 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 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 장비 임대료에 관해서는 산출 기준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별표 6, 3.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하여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 또는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3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시험장비 사용	시험장비 구입비 시험장비 임대비 내역서 미 반영 비용 계상 여부 별도 반영 필요성 시공사 부담 여부

질문

시험 장비의 구입비 또는 임대비가 내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을 별도로 계상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가목에 의하면,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 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3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암판정 시험	품질시험비 반영 가능 여부 암반 판정 시험 지반조사/추가시험

질문

암 판정 시험 비용의 품질시험비 반영 가능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1. 일반 사항 다목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번호 4-3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업무 겸직	품질관리 기술인 공무 업무 겸임 겸임 기간 품질관리 활동 인정 여부 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가능 여부

질문

품질관리 기술인이 공무 업무를 겸임한 기간 동안, 해당 기간을 품질관리 활동으로 인정하여 품질관리 활동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기준에 따라 계상 된 품질관리비는 3.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하여 산출 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관리 기술인 겸임 등으로 일정 기간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비용은 품질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주체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3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관리 기술인 공백 품질관리 기술인 인건비 계상 시험관리인 으로 제한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중급기술인 공백 기간 동안 초급기술인이 중급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기간의 품질관리 기술인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또는 시험관리인으로 보아 별도 인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해당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급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초급기술인 1인, 중급기술인 1인이 배치된 경우, 시험관리인에 해당하는 초급기술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되, 시험 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인 중급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초급기술인 1인만 배치된 경우,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이 추가 배치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품질관리활동비로 사용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번호 4-3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관리비 누락 설계변경 품질관리건설 기술인 인건비 간접노무비 포함 여부 별도청구가능여부

질문

품질관리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는지, 아니면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1)은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4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특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대체 배치 인건비 단가 적용 기준 중급 단가vs특급 단가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특급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대체 배치된 경우 해당 인건비는 중급 기준이 아닌 특급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 중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할 때에는, 별표 5의 배치기준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4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준공 정산 품질관리 활동비 전액 삭감 삭감 타당성

질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해 품질관리자가 30개월 배치된 사업장으로 발주처와 준공정산 시 내정된 품질관리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의 업무를 수행토록 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 일반사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 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하고,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건설공사를 착공(실착공을 의미)하기 이전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에 따라 승인한 기간까지 배치되어야 합니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에 "2.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 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 인력(건설기술인)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에 따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등에 명기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4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법정 배치 기준(중급1, 초급1) 특급기술인 2명 배치 대체 배치 품질관리비 정산 기준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법정 배치 기준(중급 1, 초급 1) 대신 특급 기술인 2명을 배치한 경우, 품질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 (법정 기준 적용 여부, 실제 배치인력기준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 품질관리 활동비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시험관리인(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정하고 있으며,

- 1)은 별표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표5의 배치기준에 따라 중급1인, 초급1인을 배치하는 경우 중급1인의 인건비는 품질관리활동비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시험관리인에 해당하는 초급 1인의 인건비는 간접 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별도 계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표5의 배치기준의 최소 등급보다 상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경우에는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상 및 정산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4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관리 전담팀 타부서 인원 품질관리 업무 참여 품질관리 인력 인정 여부

질문

ㅇ 품질관리비 중 인건비가 계약상 품질관리 전담팀에만 해당하는지,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참여한 타 부서 인원도 품질관리 인력으로 인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건설 기술인은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4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 기준 급여 명세서 증빙 자료 실제 사용 금액 정산 증빙없이 정산 가능 여부

질문

품질관리자 인건비 정산 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금액을 정산해야 하는지, 또는 별도의 증빙 없이 계약 내역 상의 월 단가 기준으로 정산 가능 한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 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별표 6, 3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주자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할 때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4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시험관리인 인건비 간접 노무비 포함 품질관리자 인건비

질문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시험관리인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하고, 기타 품질관리자 인건비는 품질관리비로 별도 계상하도록 구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 별표 2의 1에 의하면, 현장소장, 현장사무원, 기획·설계 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관리원 등을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 인원으로 정하고 있어,

- 간접노무비에 포함되는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하지 않고,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4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법정 배치 기준(중급1인, 초급1인) 중급기술인 인건비 품질문서작성·관리비용 발주청 청구 가능 여부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법정 기준(중급 1인, 초급 1인)을 배치한 경우, 중급기술인 인건비 및 품질 문서작성·관리 비용을 발주청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3호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 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면,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 활동 실적을 확인하여 공사 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동 법령상, 설계변경 시 단가 적용 방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은 계약 조건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4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실 착공 지연 (16개월)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공사 미 진행 상태 중급 품질관리 기술인 인건비 품질관리 활동비 사용가능 여부

질문

지장물 이설 등으로 16개월간 실착 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관리 기술인이 배치된 경우,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도 중급 품질관리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는 별표 5의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 기술인을 정하고 있어 품질관리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은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여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비용을 품질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기간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관리 활동 실적을 정산 주체가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4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휴가 기간 출산 휴가 인건비 정산 가능 여부 근무 일수 기준 대행자 지정

질문

도급내역에 중급기술인 월 22일 기준으로 품질관리활동비가 반영된 경우, 해당 기술인의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기간 동안에도 품질관리 활동비를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동일 현장에 동등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포함)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3.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품질관리비의 정산 가능 여부는 건설사업자 등이 제출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을 발주자 등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부 사항적인 사항은 정산 주체인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4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계획 투입기간 (예: 24개월) 실제 투입 시간 시험 실적 정산 기준 기간 기준vs실적 기준

질문

품질관리기술인 인건비 산정 시 계획된 투입기간(예: 24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시험실적 등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산정·정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3. 품질관리비 사용 기준 나목 및 다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 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 다만, 해당 품질관리비의 정산 가능 여부는 건설 사업자 등이 제출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을 발주자 등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부사항적인 사항은 정산 주체인 발주자 또는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5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시험비 인건비 품질관리 활동비 인건비 인건비 중복 중복 계상 여부 품질시험비vs품질관리비 비용 구분 기준 이중 지급 방지

질문

품질시험비의 인건비와 품질관리 활동비의 인건비가 중복되는 경우, 품질관리 활동비에서 품질시험비 인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가목에 의하면,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 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목에 의하여 품질관리활동비는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1)~5)의 항목을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는 별개의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시험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별표 4의 시험종목별 산출 단위량에 제11조 제3항의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 품질관리활동비에 포함되는 1)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따라 "시험관리인(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기술인 중 최하위 등급자)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비고에서 정한 노임단가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5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문서 작성·관리비 교육 훈련비(1%) 산정 기준 인건비 기준 월 인건비vs전체 인건비 비율 적용 기준

질문

품질관리 활동비 중 "품질 문서 작성·관리비, 교육훈련비(1%)"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인건비가 월 인건비 기준인지, 전체 인건비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품질 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품질 관련 교육·훈련비'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한 금액입니다.

- 따라서,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는 상기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5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인건비	품질관리 활동비 인건비 계상기준 계약일(배치 시점) 실착공 시점 품질관리 활동 발생 시점

질문

품질관리 활동비 산정 시 계약일(배치 시점)부터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또는 실착공 이후 실제 품질관리 활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는 별표 5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 1)은 품질관리 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배치되어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인건비 반영에 관한 적정 기간은 같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 주체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5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자체시험	현장 품질관리실 시험 기구 보유 시험 인력 확보 직접 시험 수행 외부 의뢰 시험 품질시험 100% 수행 여부 자체시험 vs 대행시험

질문

현장 품질관리실에서 시험 기구와 인력을 갖추고 직접 시험이 가능한 경우 외부 의뢰 없이 모든 품질시험을 100% 직접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 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 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 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현장 시험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시험과정의 적절성 확인에 대한 시험종목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5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자체시험	직접 품질시험 수행 품질시험비 지급 여부 시험비 별도 지급 인건비 vs 시험비 비용 중복 여부

질문

품질관리기술인이 직접 품질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도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가목에 의하면,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 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목에 의하여 품질관리활동비는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1)~5)의 항목을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는 별개의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5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장비비 반영	지지력 확대 기초 시험 (KS F 2444) 설계 누락 설계 변경 시험 수행 비용 상재 하중 장비 굴삭기 비용

질문

지지력 확대 기초 시험(KS F 2444)이 설계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시 시험 수행에 필요한 굴삭기 등 상재 하중 장비 비용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1. 일반 사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 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5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차량비용	품질관리 차량비 적용 기준

질문

품질관리비(품질차량)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가목 7)에 의하면,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5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차량비용	차량비 개인 차량 사용 대체 사용가능 여부 비용 인정 기준 차량 운행비 유류비/유지비

질문

품질관리활동비(또는 품질시험비)에 포함된 차량비를 품질관리기술인 개인차량으로 대체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비가. 품질시험비에 의하면, 품질시험에 필요한 차량의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실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이용 가능한 차량의 종류(개인·법인·임대 등)에 관해서는 동법상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별표 6,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하며, 품질관리 차량비용을 포함한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차량비용을 품질관리비로 사용하기 적정한지 여부 및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은 품질 관리비 정산 및 계상 주체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5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초급현장 품질관리비	초급기술인 인건비 간접 노무비 포함 품질문서작성·관리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별도 계상 가능 여부 비용 반영 제한 여부

질문

초급기술인 인건비가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경우, 품질문서 작성·관리비, 교육·훈련비, 품질검사비 등 기타 품질관리 관련 비용도 별도로 계상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초급기술인 인건비가 간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별도로 계상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 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및 3)품질관련 교육·훈련비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시험 관리인만 건설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는 별표 6 제2호 나목1) 비고란 가)에 따라 산정되는 해당 시험관리인이 속한 건설기술인 등급의 인건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을 계상한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여 계상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토록 한 4)품질검사비 및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비용으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5)그 밖의 비용은 계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간접노무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금액 계상은 동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5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통합품질관리	통합 품질관리 품질관리비 계상

질문

통합 품질관리시 품질관리비 계상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건설공사의 시험실 및 시험 장비를 통합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별도로 사업승인 및 인·허가된 건설공사인 경우, 상기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도 건설공사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별표 5에 의하여 배치되는 시험장비, 시험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도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별로 별도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6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특정 공사	전력구 공사 전력 공사 해당여부 건설공사 여부 판단 품질관리비 계상 여부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필요 여부

질문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구 공사'가 전력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동 법령에서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며, 상기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전력구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6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특정 공사	산림 사업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공사 품질 관리비 공사금액 계상 여부 법 적용 범위 건설공사 해당 여부

질문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의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 설비 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공사

- 따라서,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는 산림사업이라도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건설공사이면 품질관리 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6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검사비	강교 자재 시험 인장강도/항복강도/연신율 자재 시험비 내역서 미계상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 검사비 포함여부

질문

강교 자재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자재 시험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이 품질관리 활동비 중 품질검사비에 포함되는지 및 강교 자재 시험비가 품질관리 활동비의 품질검사비에 포함된다면, 품질검사비가 품질시험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자재 시험비를 품질 시험비에 별도로 추가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 6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시험비와,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 하고 있습니다.

- 이때, 품질관리활동비의 품질검사비는 '가)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나)내부 품질검사비, 다)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로 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비용이 품질검사비에 속해 있는지 여부는 해당내역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별표 6, 1. 일반사항 다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6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 기술인 인건비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비 미확정 설계 공종(PS)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

질문

당 현장은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품질관리비가 설계공종(PS단가)으로 산정된 경우, 품질관리 활동비 항목에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를 적용 할 수 있는지, 또한 적용이 가능할 경우 당초 산정된 품질관리비의 변경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으며, 1)의 내역을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 기술인의 인건비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중급1인, 초급1인이 배치된 경우, 중급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 품질관리활동비로 계상 할 수 있으며, 시험관리인에 해당하는 초급기술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령 상 질의하신 사항인 설계공종(PS단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은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6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미계상	소규모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품질시험계획 대상 여부 품질관리비 별도반영여부 비용 계상 의무

질문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품질관리비를 별도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비 계상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6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미계상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 품질관리비 미계상 감리 요구 시공자 부담 여부 품질관리비 별도 산출 비용 집행 의무

질문

민간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감리의 요구에 따라 시공자가 별도로 품질관리비를 산출하여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해, 발주자는 제2호(품질관리비)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6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출	품질관리비 산출계획 작성 방법

질문

품질관리비 및 산출 계획 작성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비는 가. 품질시험비와 나.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되며, 가. 품질시험비의 "인건비"와 나. 품질관리 활동비의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때, 질의하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4는 품질시험비 산출시 소요되는 인건비의 산출 단위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시험종목별 품질시험비를 산출할 경우, 업무지침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인력(별표 4 인력 중 '시험관리')의 산출 단위량은 적용하지 않으나,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시험인력 (별표 4 인력 중 '시험')의 산출 단위량에는 대한건설협회가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분류번호 4-6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요율	품질시험비 품질관리 활동비 비용포함 관계 포함여부(시험비→활동비) 설계 미반영 품질관리활동비 산정 요율 적용(낙찰률, 협의율 등) 간접비 적용 여부

질문

품질시험비는 품질관리 활동비에 포함되는 비용인지 및 품질관리 활동비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 산정 시 요율(낙찰률, 협의율 등) 및 간접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간접비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비에 의하면, 가.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 비용, 시험·검사 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품질관리활동비는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을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4) 품질검사비, 5) 그 밖의 비용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령 상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외에 설계변경 시 요율 적용 및 간접비 적용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계약조건 등 을 검토하여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6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정산	품질관리비 정산 품질 검사비 정의 인정 범위

질문

품질관리비 정산 시 품질검사비의 정의와 해당 비용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품질검사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검사비의 내역을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내부품질검사비,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매문서의 범위 등 품질검사비 내역들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비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두고 이를 제시하면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사용내역이 품질관리비로 정산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6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정산	정산 기준 시험 횟수 실제 수행 횟수 계획 대비 실적 시험 단가 낙찰률 적용 여부

질문

품질관리비(PS) 정산 시 시험 횟수는 실제 수행한 시험 횟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그리고 시험 단가에는 낙찰률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1. 일반 사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 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별표 6, 3.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7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 시험비 비용 포함 관계 품질관리 기술인 직접시험 수행 시험비 별도 지급 여부 품질 검사비 시험 결과 확인·검사 비용 내부 품질 검사비

질문

품질관리 활동비에 품질시험비가 포함되는지, 즉 품질관리 기술인이 품질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품질시험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및 품질 검사비 중 품질시험 결과의 확인·검사 비용 및 내부 품질검사비는 어떠한 항목으로 사용·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비에 의하면, 가. 품질시험비의 인건비와 나. 품질관리 활동비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시험비의 인건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라 시험 종목별 품질시험비를 산출 시 포함되는 비용이며, 나. 품질관리활동비의 인건비는 품질 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 대한 인건비로, 별도의 항목으로 계상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품질검사비는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검사비의 내역을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내부 품질검사비,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검사비 내역의 사용범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 품질관리비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이를 제시하면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계약의 상대자인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7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 활동비 경비 항목 공사 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이후 별도 비목 계상

질문

품질관리활동비를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이후의 별도 비목으로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에 의하면, 공사원가에서 품질 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예규 소관기관인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7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 시험비 월간 활동비 품질 문서 작성·관리비 교육·훈련비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품질시험비와 월간활동비는 반영되어 있으나 품질 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 품질문서 작성·관리비 및 교육·훈련비가 누락된 경우 이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호 나목에 의하면,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 인건비, 2) 품질 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3) 품질 관련 교육·훈련비, 4) 품질검사비, 5) 그 밖의 비용을 품질관리 활동비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설계변경 등 계약에 관한사항은 동 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은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조건을 검토하시어,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4-7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 활동비 인건비 제외 항목 정산 방식 실제 지출 비용 증빙 자료 정산 정액산정 (100분의1)

질문

품질관리 활동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항목에 대해 실제 지출비용을 증빙 자료로 정산하는 방식인지, 또는 인건비의 100분의 1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1. 일반사항 다 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 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PS단가 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계약조건 및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7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법정 교육비 최초교육/승급교육/계속교육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비용 반영 적정성

질문

품질관리기술인의 법정 교육비(최초·승급·계속교육)를 품질관리활동비 항목 중 '품질관련 교육·훈련비'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를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2호 나목 '3)품질관련교육 · 훈련비' 비고에 의하여, 품질 관련 교육 · 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 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품질관련 교육 · 훈련비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품질관리 기술인의 법정 교육은 기술인이 받아야 할 의무교육이며, 품질관리활동비에 해당하는 품질 관리교육 · 훈련비는 해당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별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해당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의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7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공장 점검 경비·식비 사용가능 여부 비용인정 범위 출장비 여비·교통비

질문

품질관리 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을 공장점검 시 발생하는 경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2. 품질관리 활동비에 의하면, 5)그 밖의 비용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비용을 공장점검 비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7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관리활동비	우수근로자 포상비 포상금 인센티브 사용가능 여부 비용인정 범위 복리후생vs품질관리비

질문

품질관리 우수근로자 포상비를 품질관리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 9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 기관 이고 해당기관이 검사 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품질관리 우수근로자 포상비를 품질관리활동비 중 5) 그 밖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주체인 발주자와 협의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7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품질 시험비 재료비 산출 적용 인건비 기준 품질시험비 인건비 품질관리활동비 인건비

질문

품질시험비 중 재료비 산출 시 적용되는 인건비는 품질시험비 인건비와 품질 관리활동비 인건비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2. 품질관리비 가. 품질시험비 4)에 따른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건비는 같은 목 2)에 따른 품질시험 인건비임을 알려드립니다.

제4 장 | 품질관리비

분류번호 4-7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품질시험계획 변경 시험비 반영 여부

질문

품질시험계획서 변경 후 품질시험비 반영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 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하며,

- 또한, 별표 6, 2호 가목에 의하면,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에 의하여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내에서 실시 하도록 하고 있어, 품질시험비로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별표 6, 3호 다목에 의하여,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품질관리비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산주체인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4-7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설계 반영 직접 품질 시험 수행 품질 시험비 별도 지급여부 인건비vs시험비

질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설계에 반영된 경우, 해당 기술인이 직접 수행한 품질시험에 대해 시험비를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 기준)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 및 품질시험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별표 6, 2호 나목 품질관리활동비에 의하면, 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는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정하고 있으며, 이때 시험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 로 정하고,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급 1인, 초급 1인을 배치한 경우, 시험관리인에 해당하는 초급 건설기술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중급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를 품질관리활동비로 계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8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하도급 대행	품질 시험비 하도급 계약 내역 반영 하도급 업체 선지급 원도급자 기성금 정산 비용 전가 여부 비용 부담 주체

질문

품질검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품질시험비를 하도급 계약내역에 반영하여 하도급업체가 선 지급하고 원도급자가 기성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비용 전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4-8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비	하도급 대행	협력사 선지급 사후 정산 방식

질문

품질시험 의뢰 시 협력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정산과정에서 협력사에게 비용을 지불해도 문제가 되는지 질의(시공사가 부담해야하고 협력사에 전가하면 안된다는 근거는?)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 장

품질관리 통합운영

Q.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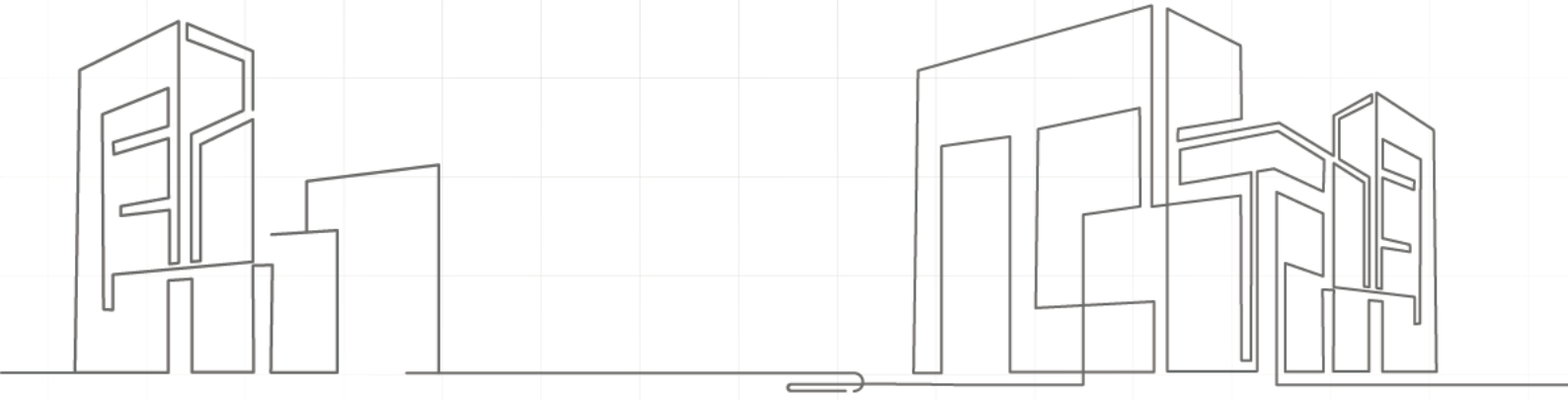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5 장 | 품질관리 통합운영

분류번호 5-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공구 분할	동일 발주자 공구 분할(1BL/2BL) 착공신고 하나의 현장 vs별도 현장 품질관리 인력 시험실 운영 통합 운영 여부 개별 운영 여부

질문

하나의 발주자가 발주한 공사를 1·2BL로 공구 분할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 이를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품질관리인력 및 시험실을 통합 운영해야 하는지, 또는 각 공구를 별도의 현장으로 보아 품질관리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총 공사금액, 연면적등 공사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수립 대상 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설 공사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별 건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건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이나 건설기술인 또한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공사 건 별로 별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 장 | 품질관리 통합운영

분류번호 5-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공동도급	공동도급 (분담이행) 대표사&분담사 품질관리(시험)계획 계획수립 주체 품질관리자 배치

질문

공동도급(분담이행)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자 배치는 대표사가 전체 공사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또는 분담 사별로 각 각 별도로 수립·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공동 도급계약방식의 공사에서 1) 공동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2)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 하는 경우는 수급인별로 품질관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에서 통합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으나,

-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분담사 별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또한 각 분담사 별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5-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외부의뢰시험 통합	BL 공사 (1BL, 2BL, 3BL) 통합시험실 운영 외부의뢰시험 감리단 입회 시험성적서 공사명 다중 기재 감리단 다중 기재 성적서 공동 인정

질문

1BL, 2BL, 3BL 공사에서 통합 시험실을 운영할 경우, 외부 의뢰시험시 3개 감리단이 모두 입회하고 시험성적서에 3개 공사명과 3개 감리단을 기재하면,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3개 현장에서 공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별 건의 건설공사로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건설공사별도로 수립한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도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의뢰 시험의 경우도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제5 장 | 품질관리 통합운영

분류번호 5-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인접 구역 통합	도시정비사업 별도 인·허가 현장(2개) 동일 발주자 동일설계·감리·시공 공사조건 유사 물리적 인접

질문

도시정비법에 따라 별도로 인·허가된 2개 현장이더라도, 동일 발주자·설계·감리·시공 및 공사조건이 유사하고 물리적으로 연접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하나의 현장으로 품질관리(시험)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품질 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별도로 인·허가된 건설공사인 경우, 상기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도 건설공사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별표 5에 의하여 배치되는 시험장비, 시험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도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별로 별도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 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 이나 인 ·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건설공사의 시험실 및 시험장비를 통합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규정에 따른 통합운영 가능여부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이 공사의 규모,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 · 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5-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시험실 통합	시험실 통합운영 인접한 건설 공사 인접 기준 현장 간 거리 동일 현장 여부

질문

시험실 통합운영 시 '인접한 건설공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인접한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해서는 동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험실 통합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5 장 | 품질관리 통합운영

분류번호 5-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콘크리트용 골재	인접한 건설현장 (2개) 품질관리 통합 운영 레미콘 골재시험 공동수행 시험 통합 적용 시험성적서 공유

질문

인접한 2개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레미콘 골재 시험을 공동으로 수행(통합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 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인접하여 있다면 인·허가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실 및 시험기구 등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은 각각 수립되어야 하고, 품질관리기술인 역시 각각 선임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 · 부재에 대하여는 현장별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하신 레미콘 원자재에 대한 시험여부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레미콘 전문 제조업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상기된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 하거나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분류번호 5-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콘크리트용 골재	공동주택 단지 인·허가 분리 감리단 분리 공동도급 시공 자재공급원 골재 시험 대표 도급사 시험생략 여부 시험공동 적용

질문

단지 별로 인·허가 및 감리단이 분리된 공동주택 현장에서 공동도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자재 공급원 골재 시험을 대표 단지 또는 대표 도급사에서만 수행하고 다른 단지·도급사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단지별 통합 시험 여부에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은 건설공사별 공사 규모에 따라 수립 대상을 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건설공사로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 또한 단지별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동수급체의 통합시험에 관해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1. 공동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2.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별로 품질관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제4조 제7항 제1호와 같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통합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품질관리 할 수 있으나, 제4조 제7항 제2호와 같이 공사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별도로 품질검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5 장 | 품질관리 통합운영

분류번호 5-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품질시험계획 통합	BL 구분 (1BL, 2BL) 사업부지 분할 품질시험 계획 통합 운영 단일계획 수립

질문

하나의 현장에서 1BL, 2BL로 사업 부지가 구분된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품질 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별도로 사업승인 및 인·허가된 건설공사인 경우, 상기규정에 따른 품질시험계획도 건설공사 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합니다.

분류번호 5-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 통합운영	품질조직 통합	동일 지역 사업승인 분리 2단계 공사 품질관리 조직 통합 운영 조직통합 여부

질문

동일 지역에서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아 2단계로 진행하는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 기술인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가 별도로 사업승인 되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도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 다만, 건설공사 현장의 품질관리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3. 책임과 권한에 의하면,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는 현장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관리 계획서에는 품질관리, 공사, 공무, 관리 등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여 단위조직 및 공사 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 조직구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6 장

시험실 및 시험장비

Q.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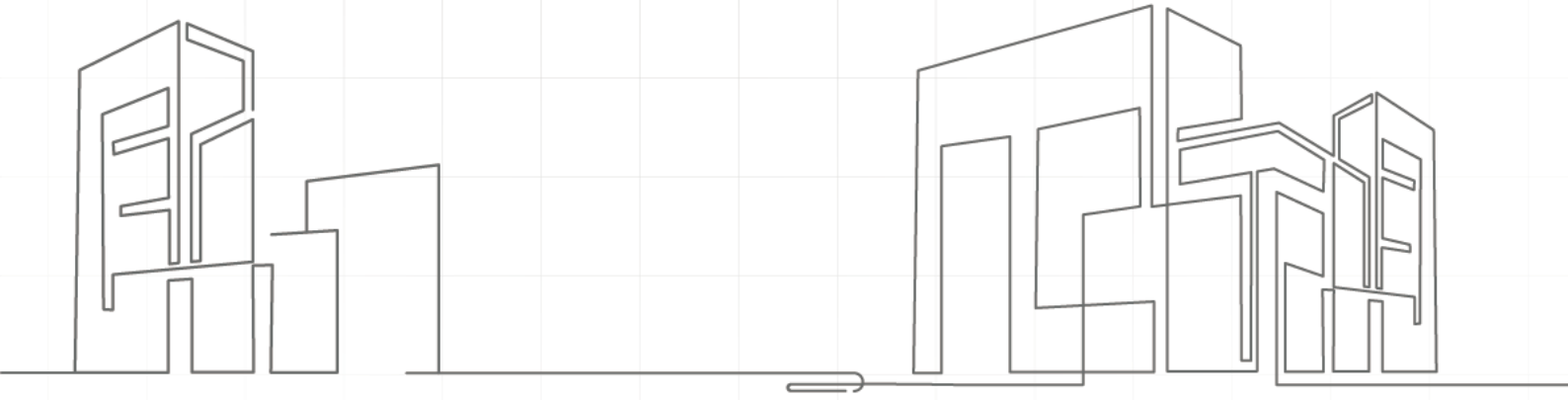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시설 운영관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시험실 설치 품질관리기술인 선임 배치 의무 시험 없음 불필요 상황 의무 적용 여부

질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이지만 별도의 시험실 설치나 품질관리자 선임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시험실 설치 및 품질관리 기술인 선임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계획 (이하"품질관리 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 (이하"품질시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 비고 2항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 · 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비치 품목	품질시험실 시공용 견본품 자재 샘플 시험실 용도 보관 기준

질문

건설현장 품질시험실에 시공용 견본품(자재 샘플)을 함께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공사 규모별로 정하고 있으며, 시험실에는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 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9에 의하면, 시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다지역 공사 하나의 건설공사 시험실 배치 시험기구 배치 지역별 설치 여부

질문

국도터널 구축공사로 4개지역에 건축물을 공사해야 하는 경우(하나의 건설공사), 지역마다 시험실 및 시험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및 각각 배치하여야 할 경우 각 현장의 시험실 및 시험기자재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공사규모별로 정하고 있으며, 시험실에는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외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구간이 여러 지역에 거쳐 있는 등 공사의 현지실정에 따라 품질 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실 배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아님 시험실 설치 설치의무 여부 품질시험 시설 적용 기준

질문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축공사의 경우, 시험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영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 공사일 경우도 배치 기준에 따른 시험실을 설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때,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는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으며,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착공 후 현장 여건 시험실 설치 곤란 시험실 설치 시기 설치 지연 발주자 승인 설치 연기 가능 여부

질문

착공 후 현장여건으로 시험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설치시기를 발주자 승인으로 연기할 수 있는지, 또는 착공과 동시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고 있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기간 동안은 현장에 시험실을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등 법령상 구체적인 배치 시기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에 의하면, 시험실 배치 평면도를 포함하여 시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배치시기 조정 가능여부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동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은 착공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품질시험 항목 없음 현장시험 없음 시험실 설치 설치의무 여부 품질 시험시설

질문

현장에서 시행할 예정인 품질시험항목이 없는 경우에도 현장에 시험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품질 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정하고 있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공사 규모에 맞는 시험실을 배치하여야 하며, 등 법령상 미 배치 가능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별표5 의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검사대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시험실의 규모를 축소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품질시험 수행 가능 발주자 직접 시험실 운영 시험대행 수행 시험결과 통보 법적 허용 여부 품질관리 책임 주체

질문

시공사가 품질시험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발주자가 직접 시험실을 운영하여 시험을 대신 수행하고 결과만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수립 및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이때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3조에 따라 업무지침 별표5의 품질관리규정(시험·검사자의 숙련도 평가, 시험·검사 종목별 전, 후 사진 포함)을 수립·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시험실 컨테이너 컨테이너2동 연결 임시 시험 시설 하나의 시험실 구성

질문

시험실을 컨테이너 2동을 연결하여 하나의 시험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공사 규모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시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에 의하면, 시험실 배치 평면도를 포함하여 시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시험실 설치 품질 시험비 시험실 설치비 시험 기구비 외부의뢰 시험비 비용 포함 범위 계상·정산

질문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는 경우, 품질시험비 지급범위에 시험실 설치비·시험 기구비·외부의뢰시험비를 모두 포함하여 계상·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품질시험비는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의뢰 시험 또한 품질시험비의 한도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설치 기준	품질시험실 설치 시험 기구 일괄 구비 순차 구비 공정 진행 구비 시점 필요 시점기준

질문

품질시험실은 설치하였으나 시험기구를 착공 시 일괄 구비해야 하는지, 또는 공정 진행에 맞춰 필요한 시점별로 순차 구비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 및 시험 장비를 정하고 있어, 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장비 배치 시기에 관해서는 동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 별표 9, 3. 시험 시설에 의하면,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그 밖의 사항 등을 품질시험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험장비 반입시기를 공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 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과 협의 하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운영 관리	시험실 이전 품질시험계획서 변경 면적 기준 감리단 승인 인·허가기관승인 시험 장비 교정 검사 재교정 필요 여부

질문

품질시험실이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제사항(계획서 변경, 승인, 면적·기능 유지 등)이 있는지 및 시험실 이전 승인에 대한 주체 및 시험 장비의 작동 및 계측값에 이상이 없더라도 교정 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공사 규모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에 의하면, 시험실 배치 평면도를 포함하여 시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운영을 포함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90조 제1항에 따라, 수립시와 동일하게 공사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사본을 인 ·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에 의하면,대여받아 사용하거나, 하도급사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여 정해진 주기로 교정 검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비에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시험장비는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고시 담당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운영 관리	품질시험실 설치 압축강도 시험기 양생수조 시험실 내부배치 기타 시험 기자재 외부별도 공간 칸막이 구획 시험실 분리 운영

질문

품질시험실 설치 시 압축강도시험기와 양생수조만 시험실 내부에 두고, 나머지 시험기자재는 현장 외부 별도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공사 규모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이외의 시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에 의하면, 시험실 배치 평면도를 포함하여 시험시설에 관한 사항을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시험계획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실 운영 관리	시험장비 임대 하수급자 장비 개인 장비 사용가능 여부 장비 소유 형태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항목은 장비를 임대· 대여·하수급자·개인장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에 의하면,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별지 제1호 서식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사가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임대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거나 하수급자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시험장비도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서식임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장비 사용	시험장비 사용 곤란 타현장 장비 사용 타회사 장비 사용 시험기구 공동 사용 장비 공유 품질 시험 사용가능 여부

질문

건설현장 시험장비 사용이 곤란한 경우, 타 현장 또는 타 회사의 시험기구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인접한 건설공사의 시험실, 시험장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건설현장에서 장비 고장, 교정 등으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 검사(이하,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6-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장비 사용	시험장비 통합운영 검·교정 성적서 공동 명의 발급 단일 명의 성적서 현장간 적용 교정성적서 공유 장비관리 주체

질문

1·2차 현장의 시험장비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검·교정 성적서를 두 현장 공동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는 1차 현장명의 성적서만으로 2차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인접한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및 시험장비등을 통합운영 할 수 있으나, 통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험장비 통합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장비 사용	시험 장비 교정 검사 유효기간(1년) 공동 사용 추가 교정 필요 여부

질문

A 시공업체 명의로 교정 받아 1년 유효한 시험장비를 B·C 시공사도 별도 교정 없이 유효기간 내 공동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인접한 건설공사의 시험실, 시험장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시험장비 사용	현장 외부 반출 외부사용 발주청 승인 인·허가기관 승인 승인 인정 여부 품질시험 장비 이동

질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험 기기를 현장 외부로 일부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경우 경제 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에서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시험장비를 반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 시행령 별표 9, 3. 시험시설에 의하면,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그 밖의 사항 등을 품질시험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협의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6 장 | 시험실 및 시험장비

분류번호 6-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외부 시험장비	시험기구 검·교정기간 장비 공백 레미콘 업체 시험기구 대체 사용 외부장비 사용

질문

건설 현장 시험실의 시험 기구가 검·교정 중인 기간 동안,레미콘업체의 시험 기구를 대체 사용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 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에는 시험시설(장비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는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에 필요한 시험·검사장비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 등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 업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6-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시험실 및 시험장비	외부 의뢰시험 대체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시험실 설치 곤란 외부의뢰 시험 전면 대체 시험실 미설치 설치의무 여부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시험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모든 시험을 외부 의뢰로 대체하고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대상공사에서 공사규모별 배치하여야 하는 시험실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상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시험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별표 5의 비고 2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종류 · 규모 및 현지실정 등에 따라 시험실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따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인접현장의 시험실 및 장비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 장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Q.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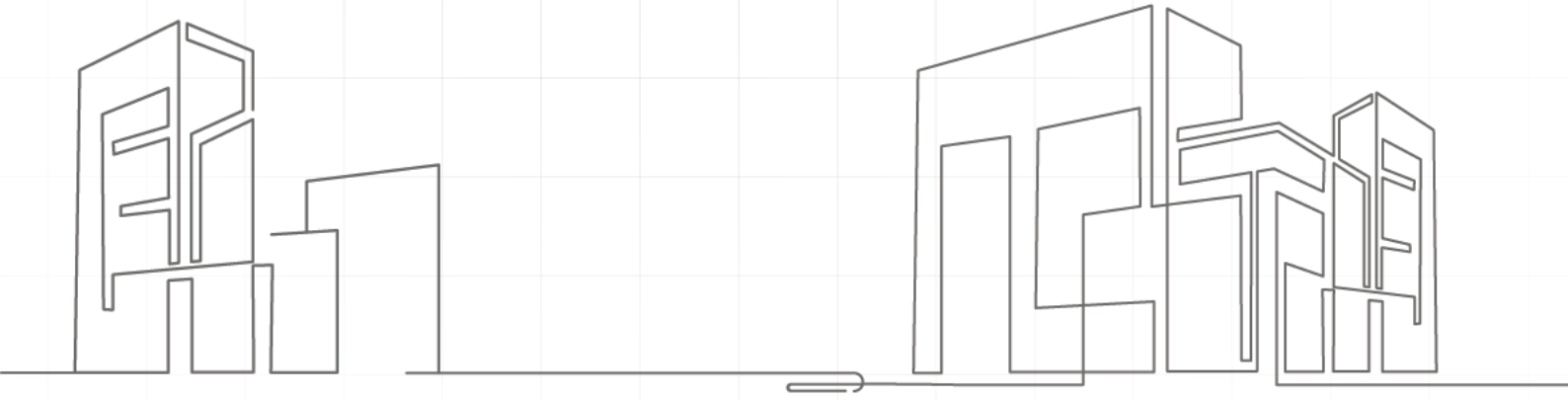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검측 업무	품질시험계획 미포함 공종 검측(검사) 업무 품질관리 기술인 품질관리 고유업무 업무 범위 수행가능 여부

질문

품질시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종 간 검측(검사)업무를 품질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고유업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토록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 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품질관리"란,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동 지침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 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 (예:겸임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검토·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겸직 승인	공사·공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겸직(겸임) 공사·공무·안전업무 인·허가기관 승인 발주청 승인

질문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공사·공무·안전 등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지, 가능 범위와 시행령 제91조 제3항의 신설 취지가 무엇인지 질의

민원 응답

○ 우리 부는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의 겸직을 금하기 위해 '20.5.2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하였고,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허가 없이 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제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였으며,

- 같은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1.13에 의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제91조 제3항 각 호 외의 업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수행한 경우 벌점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 겸임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겸직 승인	겸임 판단 기준 품질관리 업무 건축 시공 업무 업무중복 범위 법정 배치 기준 공무 담당

질문

품질관리 업무와 건축시공업무의 중복 범위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의 겸임으로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법정 배치 품질관리 기술인 외 별도의 공무·시공 담당 없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였으며,

- 상기 조항에 따라, 해당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 수립 시 현장 내 개개인에 대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3.책임과 권한에 따르면, 현장 내의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업무분장)이 명확히 부여·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인력은 상기 현장에 적용되는 법령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6. 자원관리에 의하면,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 자원관리 절차 (1. 인적자원관리)에 의하면, 해당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자격기준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격이 부여된 적격한 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을 품질관리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안전업무	겸직/겸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리 감독자 안전 업무 일일안전 당번제 아침조회/현장순찰/ 안전회의/당번일지 일일 안전점검 품질관리 고유업무

질문

품질 관리 건설 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및 안전 관련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 지 질의 및 품질관리자 6대 의무 이외에, 일일 안전당번제(아침조회, 현장 순찰, 일일 안전 회의 참석, 일일 안전 당번 일지 작성 등)를 수행하는 경우도 겸직/겸업에 해당하는지? 또한, 품질관리자가 일일 안전점검 시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였으며,

- 상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상기 업무외의 업무가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수행하기 적정한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자재 및 균열관리	균열관리계획서 작성 균열 조사 균열 대장 작성·관리 균열보수 업체 관리 품질관리 vs 시공관리

질문

품질관리기술인이 자재승인, 자재검수, 균열관리계획서 작성, 균열조사, 균열대장 작성·관리 및 균열보수업체 관리가 품질관리기술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 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 품질관리기술인이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기술인이 균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승인기관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타현장 겸직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타현장 소장 겸직/겸임 현장간 겸직

질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타 현장의 소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및 공사 준공직전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확인서 형식으로 발주자 동의를 얻으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6. 자원관리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겸임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에 따라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실정에 따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인력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변경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가 변경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자 서명	품질관리 기술인 특급 기술인 중급 기술인 품질 관련문서 결재 담당자권한

질문

레미콘 송장 확인 서명이 품질관리자에 한정되는지, 또는 공사팀 및 현장관리자 등 다른 관계자도 함께 서명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1. 운반차 번호, 2. 생산·도착시각 및 타설완료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 밖에 지정사항 등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납품서 확인 또는 기재는 건설사업자 등에 소속된 품질관리기술인 등 사용자재에 대한 확인 업무 담당자가 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자 서명	특급기술인 (품질책임기술인) 중급 기술인 품질관련 문서 담당결재 권한범위

질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품질 관련 문서의 담당 결재 및 서명이 특급기술인에 한정되는지, 또는 배치된 중급기술인도 담당 결재 및 서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3. 책임과 권한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에는 공사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중 품질관련 문서 담당자 서명 주체는 품질관리계획의 업무분장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자 업무 수행	현장시험 수행 품질검사 대장 작성·서명 직접수행 여부 관리업무 전담자

질문

품질 관리 기술인이 현장 시험 수행 및 품질검사 대장 작성·서명 업무를 직접 수행 할 수 있는지, 또는 관리 업무 전담자로서 현장 시험은 수행할 수 없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품질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 품질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품질검사 대장에 기재, 서명하는 것을 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1. 일반사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에 의하면, 품질관리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인 '시험관리인력'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자인 '시험인력'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어,

- 질의하신 현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시험인력'이 별도로 배치되어 있으며,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기술인은 품질검사에 대한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업무는 품질관리기술인이 아니라 시험인력으로 배치된 인원이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자 업무 수행	교량 시공 연약지반계측관리 강선 인장 시험 값 시험시공 결과보고 시험 값·데이터관리

질문

교량 시공 및 연약지반 계측관리, 강선 인장 시험 값 관리, 시험시공 및 결과보고, 시공 중 측정되는 시험 값·데이터 관리 업무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 수립 시 현장 내 업무분장을 통하여 결정할 사안이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3. 책임과 권한에 따르면, 현장 내의 개개인에 대하여 책임 및 권한 (업무분장)이 명확히 부여·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 (또는 시험)계획서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자 업무 수행	건설재료 관련 자격 자격 미보유 골재 시험 직접 수행 시험결과 유효성

질문

현장에 배치된 고급 품질관리기술인이 건설재료 관련 자격은 없으나 골재시험을 직접 수행한 경우, 해당 시험결과를 유효한 품질시험 결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기술인이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배치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인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1. 일반사항 마목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자 직무분야	토목공사업 등록업체 품질관리 기술인 직무 분야 토목 품질관리기술인 건축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선임 직무분야 변경

질문

토목공사(입찰 시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에서 배치된 직무분야 토목 품질관리 기술인을 직무분야 건축 품질관리기술인으로 변경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기술인의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품질관리 기술인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정하고 있으나, 배치 여건상 직무 분야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 분야의 기술인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되기 적합한지 여부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7-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품질관리자 직무분야	고급 품질관리기술인 품질 실적 부족 시험업무 경험 없음 부적합 처리 검토자 책임 직무분야 경력 건축 분야

질문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고급 등급이지만 품질실적·시험업무 경험이 없는 기술인을 부적합 처리한 경우 검토자의 책임 여부와, 건축 분야 경력으로 인정된 품질관리기술인을 도로 분야 품질관리기술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면, 품질관리 대상공사별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기술인의 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품질관리기술인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정하고 있으나, 배치요건상 직무분야 및 경력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기술인으로 배치되기 적합한지 여부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하도급 대행	고급 품질관리기술인 품질실적 부족 시험업무 경험 없음 부적합 처리 검토자 책임 직무분야 경력 건축 분야

질문

하도급사 소속 기술인을 품질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또한 품질시험을 전부 공인시험 기관에 외부 의뢰하는 경우에도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및 현장 상주의무가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주체는 원도급자이며,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선임도 원도급자에서 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에서 공사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동안 건설현장에 배치되어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는 품질관리 인력을 축소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7 장 |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분류번호 7-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현장소장 겸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 기술인 품질관리 책임자 업무 겸임 가능 여부

질문

현장대리인이 품질관리기술인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 (예:겸임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품질관리자 배치

Q.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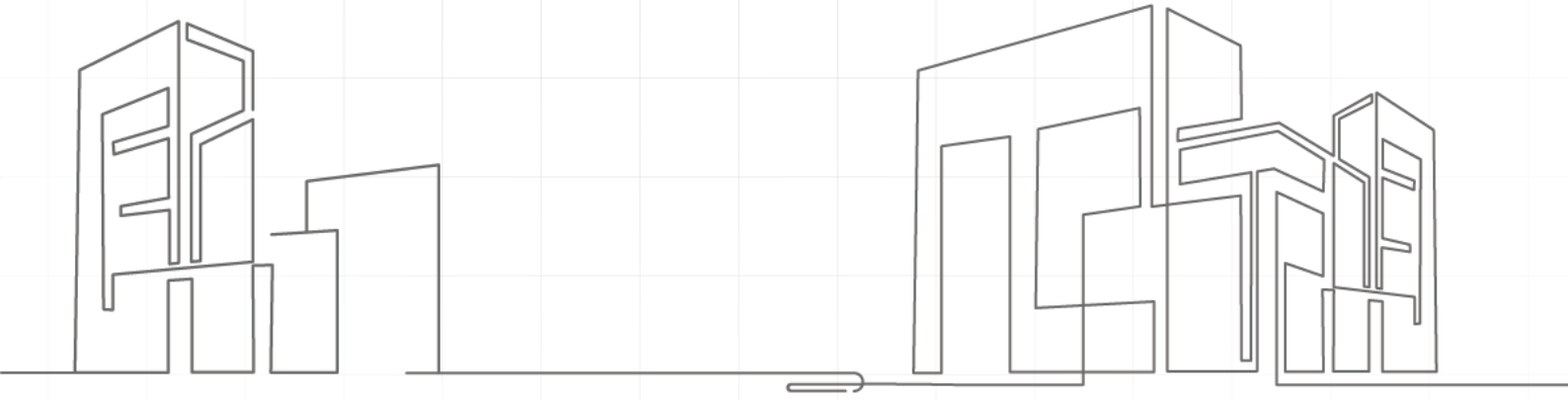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공동도급	총공사비 100억 이상 공동 도급(분담이행) 건축·토목 분담 분담금액 100억이하 공사구간 분리 곤란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질문

총공사비 100억 이상 공사를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수행하되 건축·토목 각 분담금액은 100억 이하이고 공사구간 분리가 곤란한 경우,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전체 공사 기준으로 배치하는지 또는 분담공사 기준으로 배치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1호 및 2호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1. 공동 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통합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할 수 있으며, 2.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별로 품질관리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공사가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에서 전체공사에 대해 통합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한 전체 공사에 대해 통합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공사가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한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업무범위	공동도급	종합건설사 (지분 30%) 전문건설사(지분70%) 품질관리기술인 선임 주체 전문건설사 소속 기술인

질문

종합 건설사(지분 30%)와 전문건설사(지분 70%)의 공동도급 공사에서 전문건설사 소속 기술인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공동 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가 통합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사에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를 포함한 품질관리계획 및 관련문서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종합건설/전문건설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부실벌점	품질관리자 미배치 겸직문제

질문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겸직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 · 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 · 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 ·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 7. 지원 7. 1 자원관리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시험·검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주관 할 수 있도록 공사·공무부문과 독립(예:겸임금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시험실·시험 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법 시행령 별표 8호 1.13)에 의하여 벌점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인근 현장 중복 배치	중복 배치 인근 현장 겸직/겸임 복수 현장 배치 상주 의무

질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인근 현장에 중복배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 · 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은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인접한 건설공사의 시험실, 시험장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 건의 건설공사로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 품질관리기술인도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기술인은 통합운영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특정 공사	공사규모 산정 총 공사비 분리 발주 전기 공사, 통신 공사, 소방 공사 공사금액 포함 여부

질문

품질관리기술인 배치를 위한 품질관리 대상공사 규모 산정 시 분리 발주된 전기·통신·소방공사의 공사금액 및 규모를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공사 규모별로 품질관리 대상공사 등급을 정하고, 등급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기술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대상공사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전기공사 등에 대한 품질관리인 및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에 대하여는 개별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특정 공사	시스템 공구 승강기 안전문 설비 기계공사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대상 전문공사 여부 품질관리 기술인 공종간 겸임

질문

시스템 공구 내 승강기 안전문 설비 기계공사가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대상인지, 배치 대상일 경우 토목공구에 배치된 품질관리기술인이 해당 기계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기계공사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및 별표5에 의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토목공사와 기계공사가 공구 분리 등으로 별 건의 건설공사로 구분되는 경우, 각 건설공사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별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도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특정 공사	전기 공급시설 공사 품질관리자 배치

질문

전기공급시설 품질관리자 배치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동법령에서 사용하는 '건설공사'는 동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이며, 상기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전력구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검사전문기관 인원 배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품질시험) 외부 전문기관 시험인력 파견 현장 상주 품질시험 수행 위탁 수행

질문

시공사가 품질검사대행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업체 직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품질 시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 야 하고,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 다만, 품질시험기관에 인원이 상주할 경우 해당 인원이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기관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여 성적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품질관리자 경력 기준 적용

질문

특급품질관리대상 현장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경력사항)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로서 품질관리기술인 배치하는 경우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중급기술인 1명 이상,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을 배치기준으로 하고 있고, 중급기술인과 초급기술인은 경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검사전문기관 인원 배치	하나의 사업부지 단일계약(1건) 건축허가4건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기준 계약단위 허가단위

질문

하나의 사업부지에서 1건으로 계약되었으나 건축허가를 4건으로 각각 받은 경우,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계약 단위로 적용하는지 또는 건축허가 단위로 적용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또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공동 수급체 주 계약자 부 계약자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선임 주체 통합 선임

질문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주계약자만 선임하면 되는지,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별도 선임이 필요한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4조 제7항 1호 및 2호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1. 공동 수급체가 통합조직을 구성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사가 통합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2. 공동 수급체가 각각의 조직별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각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 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공사가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사에서 전체공사에 대해 통합 품질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한 전체 공사에 대해 통합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공사가 업무지침 제4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계획을 독립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한 수급인 별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별도로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배치기준 충족 등급조합 변경 특급→중급 대체 배치기준 최소 요건 상향/하향 배치 변경신고

질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변경 시 법정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배치 등급보다 낮은 조합 (예: 특급 2인·중급 1인 → 특급 1인·중급 2인)으로 인·허가기관에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공사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의 등급과 인원을 정하고 있으나, 건설 기술인 변경 시 기존에 배치된 기술인의 등급과 동등 이상의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종전에 배치된 건설 기술인의 품질관리등급보다 낮은 등급이라도 별표 5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변경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조건,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연면적 4,500m² 공사비 50억원 노후시설 개선 리모델링 공사 건축허가·신고 대상 아님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의무

질문

연면적 4,500m², 공사비 50억 원 규모의 노후시설 개선(리모델링) 공사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품질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일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건설공사에 품질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상기기준에 따른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공사비 증가 품질관리자 추가 선임

질문

공사 금액 증액에 따라서 품질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공사에서 총공사비는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공사 계약 체결 이전의 예정금액(당초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2에 따라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사금액 상향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 추가배치는 발주청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퇴사 선임 해제 변경 보고 재배치 기한 공백 기간 발주청 변경 신고

질문

품질관리 기술인 선임 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별도 보고 의무와 재배치 기한이 있는지, 즉시 채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기술인 변경을 포함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립시와 동일하게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건설기술인은 별표5와 같으며, 동 법상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미배치 가능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별표 5,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실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품질관리기술인 교체 요구 정당한 사유 부당 요구 교체 의무 법령 근거

질문

건설사업단이 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품질관리기술인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또한 품질관리기술인 교체 사유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기술인 변경을 포함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시와 동일하게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건설기술진흥 법령상, 품질관리기술인 교체 사유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시기	현장 근무 시작 시점 착공계 제출일 실 착공 공사준비 기간 상주 근무 배치 시점 착공 정의

질문

품질관리기술인의 현장 근무 시작 시점이 착공계 제출일인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준비 기간을 제외한 실착공 직전부터 상주 근무를 시작하면 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은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 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시기	공사기간 연장 20개월→28개월 추가시설(1개동) 품질관리대상공사 등급 품질관리기술인 배치 연장 기간적용 여부

질문

당초 20개월 공사 중 18개월 경과 후 시설 1개동 추가로 총 공사기간이 28개월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추가 공사기간에도 당초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기준의 품질관리기술인을 계속 배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수립 대상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기술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공사가 기존 건설공사에서 추가된 공사로 기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인도 기존 공사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별표 5의 비고 2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시기	법정 배치기준 공사기간 전체 상주 유지 미 배치 벌점 부과

질문

총공사 기간 동안 법정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3인을 계속 배치하여야 하는지와, 미 배치 시 벌점 부과 여부 및 품질관리 업무량에 따라 기간별 인원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 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건설 기술인을 미 배치할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8, 1.13에 따라 벌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행규칙 별표 5의 비고 2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고려하여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 조정 가능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2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시기	공사 중단 기간 품질관리자 미 배치

질문

공사 중단 기간 품질관리자 미 배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시험 · 검사 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자의 선임을 변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거나, 공사 중지 기간 동안 품질관리자 미배치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시기	실 착공 품질관리기술인 현장투입 시점 배치기준 시점

질문

착공계 제출 시기와 실 착공 시기가 다른 경우 품질관리기술인의 현장 투입 기준 시점은 언제 인지, 또한 착공계 접수 시 타 현장에 배치 중인 기술인의 경력증명서로 신고가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 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을 정하고 있어, 품질관리 기술인은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동안 현장에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은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착공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중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는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품질관리기술인의 현장 투입 기준시점에 대하여 동 법령 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품질관리(시험)계획의 검토,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공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시기	공석(미배치) 지속 기간 시정 명령 행정 처분 벌점

질문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공석이 며칠 이상 지속될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또한 시정명령 외에 가능한 행정조치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건설 기술인은 별표 5에 있으며, 같은 법 상 품질관리기술인 미 배치 가능 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1.13에 의해 벌점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배치 시기	공백(미배치) 허용 여부 재배치 기한 변경 배치

질문

건설 현장 품질관리 기술인의 공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지, 공백이 발생한 경우 며칠 이내에 변경 배치를 완료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4항에 따르면,"영제 91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 기술인 배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품질관리 기술인 미 배치 시 벌점 2점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 기술인 공백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규칙 별표 5 비고 2에 따르면, "발주청 또는 인 · 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 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 · 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기술인 퇴사로 인한 품질관리 업무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상주	품질관리기술인 상주/비상주 배치 방식 현장상주 의무

질문

도서지역 소재 공사금액 12억 원, 공사기간 2년의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비상주로 배치·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동안 건설현장에 배치되어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 장 | 품질관리자 배치

분류번호 8-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배치	품질관리자 상주	공사 기간 비상주 근무 가능

질문

공사 기간에 따른 품질관리자 비상주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공사 규모별로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 기술인의 등급 및 인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품질관리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업무 수행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 배치되어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비고2에 의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규모 및 현지실정과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험실 규모 및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 장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Q.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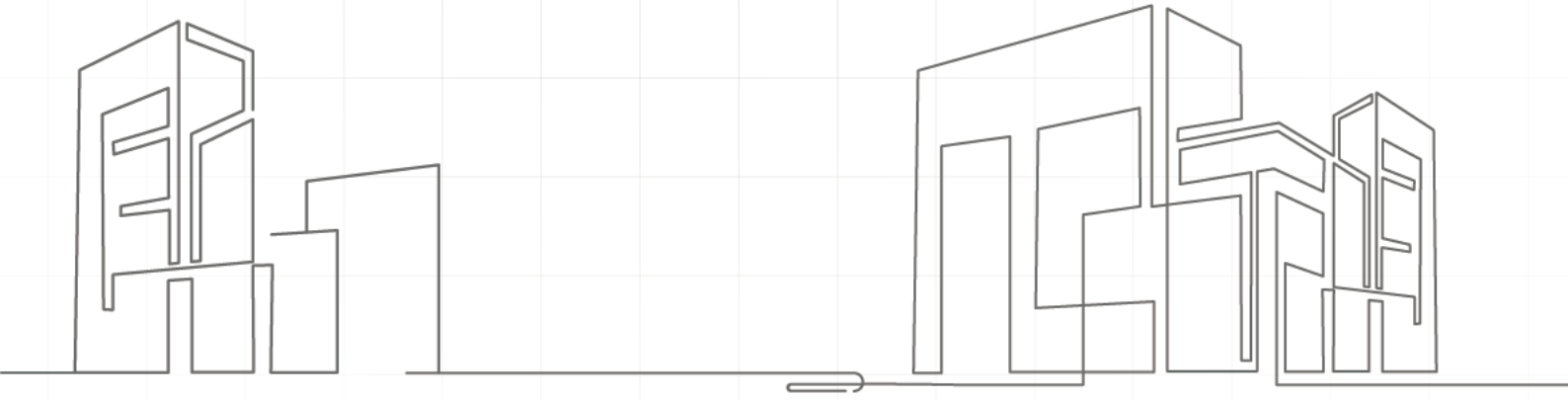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9 장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분류번호 9-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교육 이수여부	교육이수 기한 경과 5개월 지연 이수 교육 미이수 기간 인정여부

질문

품질관리기술인이 교육 이수기한 경과 5개월 이후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5개월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한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 1.13에 의하여 벌점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9 장 |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분류번호 9-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관리자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급	토목공사 현장 건축분야 기술인 품질관리기술인 배치여부 전문분야적합성(토목vs건축)

질문

토목공사 현장에 건축분야 기술인의 품질관리 기술인 배치 가능 여부, 품질관리 업무 수행한 최초 교육 필수 여부, 그리고 품질관리 기술인 등급 검토 시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품질관리 등급과 설계·시공 전문분야(품질관리) 등급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품질관리를 위해 배치되는 건설 기술인은 토목, 건축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건설 기술자 경력증명서의 품질관리에 기재된 등급(특급·고급·중급·초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상"품질관리"란에 기재된 등급에 따라 등급별 품질관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하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이하, 품질관리 기술인)은 건설 기술용역사업자,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의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은, 경력 증명서 상 "품질관리 등급"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품질시험 기준

Q.1-29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KS 인증제품	중국산 KS 인증제품 국내산 KS 인증제품 KS인증 동일 적용 여부 품질 시험 대체 가능 여부

질문

국내산 KS 인증 제품과 동일하게 중국산 KS 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의뢰 시험 후 제조사 시험 성적서로 품질시험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령 상 원산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국산이어도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료의 경우라도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KS 인증제품	KS 인증제품 품질검사 생략 제조사 시험 성적서(밀시트) 시험성적서 대체 적용

질문

KS 인증제품 사용으로 품질검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제조사 시험성적서(밀시트)로 대체하여 품질시험 횟수에 포함·관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동 제품이 KS인증 제품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할 것이나, 제조사의 성적서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KS 인증제품	KS 규격 존재 KS인증 제품 부재 JIS규격 인증서 외국규격 인정 여부

질문

KS 규격은 존재하나 KS 인증제품이 없는 자재의 경우, JIS 규격 인증서로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의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JIS 인증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KS 인증제품	품질시험계획서 승인사항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의뢰시험 3회 KS인증 자재 사용

질문

품질시험계획서에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의뢰시험이 3회로 승인된 경우, KS 인증자재 사용 시에도 승인된 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변경을 통해 시험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현장의 품질시험계획서 변경 가능 여부는, 품질시험계획서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10-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가설시설물 시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그라우트 시험항목 적용범위 그라우트 공사적용 여부 영구 구조물 한정 여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그라우트 시험항목이 모든 그라우트 공사에 적용되는지, 또는 영구 구조물에 한정되는지, 가설시설물의 제거식 어스앵커·LW공법·SGR공법에도 동일하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 별표 2, 1. 공통 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의하면, 그라우트 시험 실시대상을 영구 구조부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조부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라우트 시공 시 해당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상기기준 및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수립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므로, 해당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공급원 승인 성적서	자재 생산업체 공급원 승인 공장 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제조사 시험성적서 활용 현장 품질시험 대체가능 여부 품질시험계획 준수 여부 시험 생략가능 여부

질문

자재 생산업체가 공급원 승인 및 공장점검 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현장 품질시험을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3.「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인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제91조 제2항 각호 외의 재료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재업체가 제공한 성적서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업체가 발급한 성적서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해,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 등의 봉인을 거치지 않은 시료로 시험을 실시한 성적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공급원 승인 성적서	자재공급원 승인 감독관 서면 승인 의뢰시험 성적서 제조사 제출 성적서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

질문

KS F 492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재) 자재공급원 승인 시 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의뢰한 시험성적서만 인정되는지, 또는 제조사가 제출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도 인정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하면, 레미콘·아스콘의 자재공급원 승인 과정을 정하고 있으나, 레미콘·아스콘 외의 자재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 과정은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재공급원 승인은 해당 건설공사에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성적서는 시공사에서 의뢰하여 시험한 성적서 또는 해당 납품업체가 납품목적의 시험을 실시한 성적서 등으로 사료되나, 자재공급원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방서 등 설계도서,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원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7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첨부되는 시험성적서의 의뢰주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교량 신축 이음장치	동일 강재/동일 고무 제품 규격 상이 품질시험1회 실시 가능 여부 시험통합 적용 여부 규격별 시험 필요성

질문

교량용 신축이음 장치 NO30과 NO80을 동일 회사 제품으로 동일 강재와 동일 고무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규격이 다르더라도 품질시험을 1회만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 제1항 및 별표 2, 2. 토목공사가. 도로공사(3) 기타의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에 의하면, 고 무의인 잘 시험, 경도시험, 인열시 홈, 노화 시험, 압축 영구 시험, 오존 균열 시험 등을 KS F 4425에 따라 실시하고, 강재의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힘성 등을 KS D 3503에 따라 실시하며, 제품의 수축 신장 시험, 피로 반복 시험을 KS F 4425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 상 제품규격마다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하신 제품이 신축량이 다른 제품일 경우에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두가지 제품이 동일한 고무 및 동일한 강재를 사용하여 고무, 강재에 대한 시험은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지침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험빈도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단체표준 인증	단체표준 인증제품 시험생략 여부

질문

단체표준 인증제품도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의 경우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한 단체에서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제 9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레미콘·아스콘 등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시험 보고서	시험성적서 형식 보고서 형태 발급 성적서 형식 요건 품질검사 성적서 인정 여부

질문

품질검사 결과가 시험성적서 형식이 아닌 보고서 형태로 발급된 경우, 이를「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품질검사대행기관은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에 따라 실시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품질검사 성적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시험기준 적용	품질시험 및 검사 건설 사업자 주택 건설등록업자 시험·검사 기준

질문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 관련 기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발주자는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 ·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에 영 제 92조 제1항 해당여부, 영 제91조 제1항에 해당 여부, 영 제9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 여부, 영제 91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 여부들을 검토하여 해당 품질시험 종목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시험기준 적용	시험방법 선택가능 여부 시험방법 모두 실시 여부 KS B 0845/KS B 0896 강재 용접부 내부 결함검사 스터드 용접부 검사 마무리높이·기울기검사

질문

하나의 시험종목에 두 가지 시험방법이 규정된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하면 되는지, 또는 각 시험방법별로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예:강재 용접부 내부 결함의 KS B 0845·KS B 0896, 스터드 용접부의 마무리 높이·기울기 검사 및 타격 구부림 검사)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시험종목에 두 가지 시험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요구사항, 공사시방서 등에서 정한 적정한 시험방법을 선택하거나 규정된 시험방법을 모두 시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를 들면, 이 업무지침 별표2 다. 철강구조물공사 "강재(용접부 반입 검사)"의 '용접부의 내부결함항목'에 의하면 시험방법을 KS B 0845(방사선 투과 검사)와 KS B 0896(초음파 탐상 검사)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건설기준 용접(KCS 14 31 20:2019) 3.11.1항 및 3.11.4항에 의하면 방사선 투과 검사(RT) 대신에 자동초음파 탐상 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여건상 방사선 투과 검사(R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시험방법을 자동 초음파 탐상 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UT)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에 의하면, 시험방법이 용접 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검사와 타격 구부림 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건설기준 용접(KCS 14 31 20:2019) 3.11.5항에는 건축구조물과 토목구조물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시험기준 적용	발주처 승인 기준 시험기준 상이 기준 우선 적용여부 법정기준 vs 승인기준

질문

품질관리계획서가 승인된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시험기준과 다르더라도 발주처 승인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적정 빈도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시험기준 적용	물류센터 내 도로 적용대상여부 품질 시험 기준 적용 여부 시험실시 의무 여부

질문

물류 센터 내 도로에 대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상 해당 도로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물류센터 내 도로도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도로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시험 횟수 변경	품질시험계획서 승인 흙막이 벽체 H빔 용접 시험 감리단 승인 승인기준 준수 여부 시험 횟수 재산정 필요 여부

질문

품질시험계획서에 흙막이 벽체 H빔 용접시험을 1회로 반영하여 감리단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1회 시험만 실시하면 되는지, 또는 별도의 법적·시방 기준에 따라 시험횟수를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적정 빈도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0-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어스앙카	어스앵커 품질시험 지침 미규정 토목시방서 명기 품질관리계획 반영 여부 인발 시험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전문에 어스앙카 품질시험 관련 내용이 없는데, 당 현장 토목시방서에 명기가 있음. 품질관리계획에 어스앙카 인발시험, 크리프 시험을 필수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제시된 시험종목에 관해서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검토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품질시험 빈도 시험횟수 산정 기준 현장 반입량 기준 총 설계 수량 기준

질문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 빈도를 현장 실제 반입량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는 총 설계수량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 의하면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빈도(휨강도, 흡수율, 표면층 두께)를 제조회사별, 10,000개미만: 5개, 10,000개 이상 100,000개 미만: 10개, 100,000개 초과: 50,000개 마다 5개씩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 상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빈도를 일 반입량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 설계량을 기준으로 시험빈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타 현장 성적서	토양 오염 시험 물성 시험 기존 성적서 활용 반출 현장 성적서 반입 현장 시험 실시 여부

질문

토취장 선정 시 토양오염시험 및 물성시험에 대하여 반출 현장의 기존 성적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반입 현장에서 공인기관에 별도로 의뢰하여 물성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해당 건설공사에 반입, 사용될 자재 등에 대해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 현장(반출현장)의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성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토공 시험	노체/노상 시험빈도 기준 광활한 지역 기준 정의 폭이 넓은 성토 적용기준 해석

질문

토목 도로공사 노체 및 노상 시험빈도 중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시의 광활한 지역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① 제8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 시험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중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 ③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문하신 광활한 지역의 기준은 별도의 정의가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0-2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토공시험	되메우기 시험 기준

질문

구조물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시험기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1. 공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시험 종목은 "다짐, 현장밀도, 평판 재하, 입도, 함수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KCS 11 20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2. 자재, 2.1 재료,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는 (1) 뒤채움은 보통 쌓기 재료, 구조물 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토공 시험	시험 횟수 산정 기준

질문

보강토 옹벽 현장품질관리에서 전면판 뒷면 1m 위치와 보강재 끝 1m 위치에서 각각 실시한 시험을 품질시험비 산정 시 1회로 보는지, 또는 2회로 산정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현장밀도 시험의 시험방법을 "KS F 2311", 시험빈도를 "독립구조물인 경우 개소별 3층마다, 연속구조물인 경우 3층마다, 50미터마다, 관로매설물인 경우 3층마다, 100미터 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KCS 11 80 10 보강토옹벽에 의하면,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제시된 수량 마다 실시하며, 시험위치는 전면판 뒷면 1 m 위치 및 보강재 끝에서 앞면 1 m 위치에서 각 각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업무지침 및 KCS 11 80 10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시험비를 산출할 경우, 전면판 뒷면 1 m 위치 및 보강재 끝에서 앞면 1 m 위치에서 각각 실시한 것을 1회로 하고, 별표 2의 시험빈도에 따라 수량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0-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평판재하 시험	노체 품질 시험 기준 현장밀도 시험 평판재하 시험 시험대체 가능 여부 시험방법 대체 기준 다짐도 검사

질문

노체 품질 시험기준에서 현장밀도 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도 평판재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한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2층에 대해서도 별도의 다짐도 검사가 필요한 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2. 토목 가. 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노체'에 의하면, KS F 2311에 따라 현장밀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료 최대 치수가 재료 최대치수가 37.5미리이상인 경우,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에는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평판재하 시험은 3층 포설 후 150미터마다(2차로 기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평판재하 시험	노체 품질시험기준 현장밀도 시험 평판재하 시험 37.5mm 이상

질문

평판재하시험은 재료 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와 현장밀도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만 실시할수 있는지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장밀도시험을 대체해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기준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건설공사에서 이 업무지침 별표 2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업무지침 별표 2의 가.도로공사 (1) 흙 및 혼합골재 노체에 따라, 재료최대치수가 37.5mm 이상인 경우, 현장밀도 시험 불가능시 KS F 2310에 따라 평판재하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평판재하 시험	평판재하시험

질문

평판재하시험 보고서에 대한 시험 성적서 적용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에 의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 품질검사대행기관은 같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에 따라 실시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품질검사 성적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평판재하 시험	동상방지층/보조기층 평판재하 시험 시험빈도 기준 100m마다(2차로기준) 기준의미 해석 차로 수 적용 기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평판재하 시험 빈도 중 "100m마다(2차로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1차로 또는 4차로 공사 시 차로 수에 따라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표 2의 시험빈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업무지침 별표2에서 도로공사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평판재하의 시험빈도는 2차로를 기준으로 할 때, 선택층 및 보조기층 완성 후 100미터 마다 1회씩 시험을 실시하고, 동 기준 이상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 작업 시에는 500세제곱미터마다 시험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0-2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포장공 시험	벤켈만빔 시험 근거

질문

프루프롤링 및 벤켈만빔 시험 방법 관련 근거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KCS 11 2020 (흙쌓기(성토))3.3.28 프루프롤링 (3)에 의하면 프루프롤링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Benkelman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프루프롤링을 위한 장비 하중, 복륜하중, 타이어 접지압 및 프루프롤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을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국가건설기준센터(031-910-0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포장공시험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로 도로공사 해당여부 품질시험 기준 적용 여부 동상방지층/보조기층 현장밀도 시험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로에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도로공사 품질시험기준을 적용하는지, 적용 시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현장밀도 시험 빈도를 500m³ 기준과 층별 200m(2차로 기준) 중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상 해당 도로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파트 내 도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시험빈도는 질의하신 아파트 내 도로의 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차로기준으로 층별 200미터 마다 현장밀도 시험을 실시하되, 2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일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마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품질검사 생략	「주택법」 등 관계 법령 품질검사 완료 자재 품질인증 자재 품질검사 생략 가능여부 시험생략 요건

질문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에 대해 또한 이에 해당하는 자재의 범위가 무엇인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4.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법령상 타법령에 따른 인증제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건축법」 제52조의4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0 장 | 품질시험 기준

분류번호 10-2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시험 기준	시험 항목	PHC 파일 시험 페이스트 시험 실시 여부

질문

PHC 파일의 페이스트 시험을 품질시험으로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실시할 경우 적용하여야 할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PHC 파일 페이스트 시험의 실시여부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부장관이고시하는 기준과 해당기준을 반영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1 장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Q.1-16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성적서 유효기간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질문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KCS 10 10 15 : 2016 품질관리 표준시방서」 1.5 품질시험검사에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 보고서	현장 자체시험 데이터 인장 시험보고서 시험보고서 작성·관리·제출 공인 시험기관 의뢰 시험 시험성적서 발급

질문

인장시험을 현장 자체 시험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인상 시험 보고서를 작성·관리·제출할 수 있는지, 또는 반드시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하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 결과 서명 관리	확인란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책임감리원 서명 서명 의무 여부 품질관리기술인 서명 서명 갈음 가능 여부 서명 권한 기준

질문

압축강도 등 품질관리 문서의 확인란에 현장대리인과 책임감리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는 품질관리기술인으로 등록된 자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질의하신 사항 중 압축강도 품질문서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검사 실시 대장인 경우, 동 서식에는 시험·검사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의 성명 및 서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 관리 문서 확인란의 서명 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법령과 상기 법령에 따른 품질관리 문서의 서식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 결과 서명 관리	시험서류 확인 서명 품질관리기술인 서명 공종담당 감리원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필요 여부 감리단장 서명 필요 여부

질문

민간 주택공사에서 현장 품질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 의뢰시험 후 시험서류의 확인 서명을 품질관리기술인과 공종 담당 감리원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현장대리인과 감리단장까지 추가 서명이 필요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별지10호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하단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인 또는 서명) 기재란을 두고 있으며, 확인자 란에는 총괄감리원의 성명 및 (인 또는 서명) 기재란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서식 관리	품질시험·검사대장 시험성과 기재 방식 합격/불합격 표시 시험결과 수치 기록 기록방법 기준

질문

품질시험 검사 대장 작성 시 시험성과 란은 합격/불합격으로 기재하는지, 아니면 수치를 기록하는 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지 제42호 서식(품질검사실시 대장)에는 시험결과 및 시험결과 판정 등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험결과에는 결과값(수치 등)을 기록하고, 시험결과 판정에는 합격/불합격 등을 판정결과를 기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서식 관리	레미콘 시험검사 작업일지 시공사 작성 서류 감리 서명 포함 원본 보관 주체 시공사 보관 여부 감리단 보관 여부

질문

품질검사 대장, 레미콘 시험검사 작업 일지 등 시공사가 작성하고 감리 서명이 포함되는 서류의 원본을 시공사가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감리단이 보관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시공과 관련된 1. 자재 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점검표, 3. 자재 품질시험·검사 대장을 건설공사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 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0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설공사의 기록물 보관방법은 관계법령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서식 관리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양식 원형 사용여부 서식 변경 가능 여부 현장 맞춤 적용 내용 수정 가능 여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첨부된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등 표준 양식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장 특성에 맞게 내용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큐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기준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과 내용, 품질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내용 외에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의 구체적인 서식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내용을 포함하되 그 밖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질의상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서 외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는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표,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서식의 경우 법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서식은 비고란 등을 통해 '해당 공사의 규모·특성·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수정 또는 삭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는 '필요시 점검결과 등의 작성란 크기조정을 위한 서식 조정 가능(종에서 횡으로 조정)' 등 일부 서식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이 경우 상기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서식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류번호 1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서식 관리	시험·검사 횟수 기재 기준 횟수 산정 기준 품질검사 대장 시험·검사 구분 시험vs검사 구분 기준

질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의 "시험·검사 횟수" 기재 기준과, 품질검사대장의 "시험검사 구분" 란에서 시험과 검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의 시험·검사 횟수를 기재하는 경우, "계획"란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따른 시험 횟수, "실시"란에는 실제 시험을 실시한 횟수, "합격"과"불합격"란에는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기준에 따른 합격 불합격 횟수, "재시험"란에는 불합격 판정 등의 사유로 재시험을 실시한 횟수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품질검사 대장)의 시험·검사 구분란은, 시험인지 검사인지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열의 시험·검사를 다른 열의 시험·검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란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구분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작성방법에 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성적서 공유	동일 시공사 인근건설 현장 외부의뢰 품질시험 시험성적서 공유

질문

동일 시공사의 인근 건설현장에서 실시한 외부의뢰 품질시험 성적서를 다른 현장에서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공사규모 별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을 규정하여, 해당 건설공사가 별도로 인·허가를 받은 건설공사인 경우 별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도 현장별로 시행하여야합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성적서 공유	동일 사업 승인권자 동일 발주자 동일건설 사업 관리자 동일 시공사 타 현장 품질검사 결과 활용

질문

사업승인을 별도로 받은 A 공사와 B 공사에서 동일한 사업승인권자·발주자·건설사업관리자·시공사인 경우, A 현장의 품질검사 결과를 B 현장의 품질관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공사규모 별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수립대상을 규정하여, 해당 A, B 건설공사가 별도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인 경우 각 건설공사별로 별도로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도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별도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행의 경우도,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 서식(공사명 포함)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 현장의 품질검사 성적서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결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시험성적서 관리	시험 미 실시 자체시험/외부의뢰 시험 생략 품질검사 대장 작성 시험 생략 기록 여부

질문

인증 제품으로 자체시험 및 외부의뢰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품질검사대장(별지 제42호 서식)에 시험 생략 사실을 포함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검사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1-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전자문서	시험성과 대비표 실시간 감리단 확인 품질검사 대장 전자문서 관리 전자문서 등재

질문

시험 성과 대비표를 실시간으로 감리단 확인 후 품질검사 대장에 전자 문서로 등재·관리하는 경우, 품질검사 대장의 연번 및 정리 순서를 월말에 재조정하여 감리단의 일괄 승인을 받는 방식이 적정한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55조 제2항 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별지 제42호에 따른 품질검사 대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주기(매월 등)는 동 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품질검사 대장에는 시험·검사 종목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확인 성명·서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종목별 시험·검사 시 마다 확인 성명·서명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전자문서	품질시험 기록 전자보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0조에 따른 기록물을 전자로 보관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시공과 관련된 1. 자재 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점검표, 3. 자재품질 시험·검사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 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지침상 전자/서면 등 기록물 보관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제40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건설공사의 기록물 보관방법은 관계법령과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통합 서식 관리	시공품질 관리 점검표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동일·유사 서류/중복 서류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의 시공품질 관리 점검표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상의 동일·유사 서류가 중복되는 경우, 통합 작성 또는 상호 갈음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 각 호(1.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3. 자재 품질시험 검사 대장)의 서류가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품질관리계획의 차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시험 계획서 차이

질문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기준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에 의하면, 품질관리 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큐아이 에스오 (KS Q ISO) 9001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 및 별표 1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질시험계획서 작성기준과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1 장 |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분류번호 11-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 문서 및 서식관리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작성 기간 기준 월 단위 (1일~말일) 현장운영 기준 기간 26일~25일 기간 적용 기간 조정 가능 여부

질문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전월 26일부터 금월 25일까지와 같은 현장 운영기준의 일정 기간으로 작성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도 동일 기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60조 제10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 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고서 작성 시작일을 매달 1일로 할지, 아니면 다른 일자로 할지는 업무수행 지침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과 협의 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 예비준공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2 장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Q.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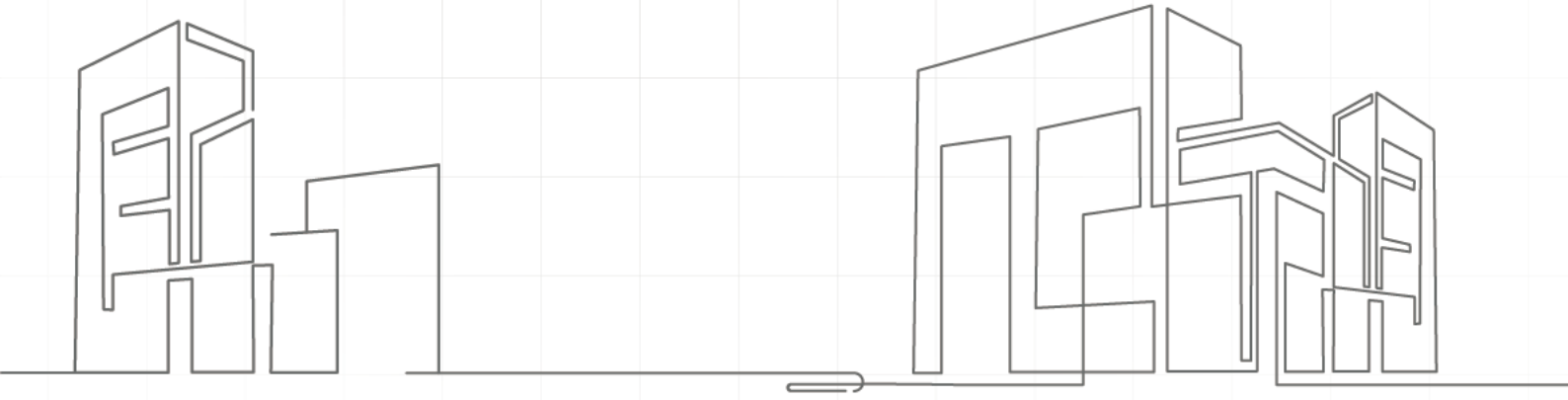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KOLAS 성적서	건설기술용역 사업자 시험의뢰 주체 KOLAS 공인기관 공인시험기관 인정 여부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험은'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의뢰하는게 맞는지, KOLAS에서 인정받은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것도 인정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 해당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 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령상 특정자재에 대한 시험을 상기규정에 따른 기관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기술용역사업자)만 상기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대행 및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KOLAS 성적서	KOLAS 인정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공인시험기관 해당 여부

질문

KOLAS 인정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성적서에 해당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은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이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동법 제26조 제1항 및 영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품질검사로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 배치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기술사 근무 불가 등록요건 유지 기술사 교체 필요 여부

질문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소속 기술사가 약 3개월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사를 교체(변경 등록)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동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그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 배치	품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상근 기준 및 책임기술인 요건

질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력'상근직'요건이 의미하는 바가 전일제 상시 근무를 의미하는지, 겸직·비상근 또는 타 기관 중복 근무가 허용되는 지에대한 질의

민원 응답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인력의 상근여부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지급 내역, 근로계약서, 관련 기록의 서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대행기관 시험실	평가 업무 세부 운영지침 상근직 요건 전일제 상시근무

질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세부 분야를 일반분야로 확대하면서 본원 시험실 증축이 어려워 인근 지역에 제2시험실을 설치하는 경우, 본원과 시험실 간 위치 및 허용 가능한 근접거리 기준이 있는지 및 기존 시험실을 복층으로 사용할 때, 복층 면적도 시험실 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시 구비하여야 하는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나 시험실 분리배치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접거리에 관한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 중 복층 사용 시 면적에 포함여부에 관해서는, 복층 면적이 시험실로서 시험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실제 시험공간으로 사용되는 면적일 경우 시험실 면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말뚝시험 보고서	말뚝 동적 재하시험 보고서 품질검사성적서 인정여부 성적서 형식 요건 보고서 vs 성적서 품질관리계획 활용

질문

말뚝 동적재하시험 보고서"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하며

-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상의 말뚝 동적재하 시험 보고서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지 않을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성적서 발급	품질검사 수행기관 계약직 직원 정규직 여부 시험자/확인자 성명 및 서명

질문

품질검사 업무 수행기관에서 정규직원이 아닌 계약직원이 시험자 또는 확인자로서 성명 및 서명을 하고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및 별표 5에 의하면, 품질검사 건설 기술용역사업자가 세부 분야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5 비고 7에 의하면, 종합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험업무처리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품질관리 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3조 및 별표 5, 4.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에 따라 책임기술인 및 시험·검사자는 영 별표 5의 등록요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자로 자격부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기준에 적합한 자가 책임기술인 및 시험·검사자로서 성적서에 서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자 배치기준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 품질검사성적서 시험자기재 건축기술자 수행 여부 시험자 자격 요건

질문

암시료 압축강도 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의 시험자는 건축기술자가 수행·기재하여도 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는 영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품질관리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5 (품질관리 규정작성기준) 항목 4 에 의하면, 책임기술인 및 시험·검사자는 영 별표 5의 등록 요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자로 자격부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지침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세부분야별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 시험장비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보유해야 하며, 세부분야별로 별표 6의 선택 시험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시험을 수행하고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기관이,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기관이면서, 해당기술인이 별표 5의 품질관리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에 적절한 자로 자격 부여된 자이고, 해당기관이 별표 6의 시험장비기준에 따라 암시료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장비를 보유한 기관인 경우 압축강도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자 배치기준	책임기술인 시험·검사자 국가자격증 필요 여부 자격증 필수여부 경력만 인정 건설 기술인

질문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책임기술인 및 시험·검사자가 반드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 하는지, 또는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인정된 건설기술인도 해당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5, 4.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에 의하면, 책임기술인 및 시험·검사자는 영 별표 5의 등록요건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적절한 자로 자격부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2 장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분류번호 12-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	평판재하시험	평판재하 시험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 종합/토목/건축분야 특수(말뚝재하)분야 시험수행 가능 여부 성적서 발급 권한 시험수행 범위

질문

평판재하시험은 종합·토목·건축 분야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 및 성적서 발급이 가능한 반면, 특수(말뚝재하) 분야 업체는 평판재하시험 수행 및 타 시험기관 외주 수행이 불가한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여, 품질검사 특수(말뚝 재하)의 업무범위를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31조 제2항 제7호 라목에 의하면, 시 · 도지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자재품질 관리

Q.1-23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KS 인증제품	KS 인증제품 품질시험 실시 의무 시험생략 가능 여부 KS인증 근거 인정 제조사 밀 시트 시험성적서 대체 가능 여부

질문

KS 인증제품의 경우에도 품질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KS 인증을 근거로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또한 제조사가 제출한 밀시트로 품질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동 기관이 아닌 제조사의 성적서(밀시트)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KS 인증제품	KS 제품 제조사 성적서 실적인정여부

질문

KS인증 제품 제조사의 성적서를 품질검사대장 등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고,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KS인증업체의 성적서는 동법 제55조 제2항 또는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성적서는 품질검사 대장 등 건설사업자의 품질검사 실적에 포함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PC제품	PC제품 레미콘 KS인증

질문

콘크리트 2차 제품(PC부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생산 시 레미콘자재 KS인증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제2항 가목에 의하면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라고 규정되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3-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공급원 승인 성적서	제조사 시험성적서 공인품질 시험기관 시험 성적서 제출 시공사 품질 시험 시험대체 가능여부

질문

자재 공급원 승인 시 제조사가 공인 품질시험 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시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품질시험을 해당 성적서로 갈음 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인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행령 제91조 제2항 각호 외의 재료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재업체가 제공한 성적서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업체가 발급한 성적서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해,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자 등의 봉인을 거치지 않은 시료로 시험을 실시한 성적서는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공급자 의미	“공급자마다” 시험 기준 의미

질문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中가설기자재 '공급자마다'의 의미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1. 공통, 아. 가설기자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는 시험 빈도를 ‘제품 규격마다, 공급자마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급자마다는 해당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 공급원(임대업체 등)이 다를 때마다 별도로 시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3-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공장점검	KS 인증제품 (PHC 파일) 자재공급원 승인 제조업체 공장 점검 공장점검 실시 의무 점검 생략 가능 여부

질문

KS 인증제품(PHC 파일) 공급원 승인 시에도 제조업체에 대한 공장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편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에 의하면,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고,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설 계량이 2천 톤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레미콘·아스콘 이외의 자재에 대한 공장점검은 동 지침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질의하신 자재에 대한 공장점검 시행여부는 자재공급원 승인권자인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에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관급 자재	지급 자재 조달청/조합 공급 공급업체 지정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서류 제출 여부

질문

지급자재의 경우 조달청 또는 조합에서 공급업체가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자재 공급원 승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6조에 의하면,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용될 자재가 관급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마이크로파일	마이크로파일 인발시험·재하시험

질문

기초공사 중 마이크로파일 시공 후 인발 시험과 재하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하나의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말뚝(마이크로파일)에 대해 실시하여야 하는 품질검사는 상기기준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적으로, 상기기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지침 별표 2, 1. 공통 가. 토공사 및 기초공사 터파기의 '말뚝기초'에 의하면, 필요시 KS F 2445에 따라 정재하시험 및 KS F 2591에 따라 동재하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 코드화된 표준시방서인 KCS 11 50 40(말뚝재하시험) 1.1적용범위에 의하면, 이 기준은 연직으로 설치된 외말뚝에 축방향 압축력 또는 인발력, 수평력(횡력)이 가해지는 압축 정재하시험, 양방향재하시험, 동재하시험, 인발재하시험, 횡방향재하시험에 적용하고, 기성말뚝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주 대상으로 하며, 소구경말뚝(마이크로파일 등)이나 복합말뚝, 합성말뚝, 기타종류의 말뚝 등의 경우에도 이 시방서를 참고할 수 있으나, 말뚝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자재 시방 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방화문 시험	품질인정 방화문 현장 시험 필요

질문

지급자재의 경우 조달청 또는 조합에서 공급업체가 지정되는 상황에서도 자재공급원 승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4.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방화문 시험	방화문 인정 기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및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 ·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해당 현장의 품질시험계획서 상 방화문 크기 별로 품질 시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성적서 유효기간	가설자재 공급원 승인 시험성적서 유효기간(1년이내) 성적서 제출 불가 신규 품질 시험 실시 시험비용 발생

질문

가설자재 공급원 승인 시 발주자가 1년 이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신규 품질 시험 실시를 위한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87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1.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 기관 및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 성과, 2. 납품실적증명, 3. 시험 성과 대기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상 1년 이내의 성적서 등 시험 성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자재공급원 성적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해당 건설공사의 자재공급원을 선정할 때, 해당 자재공급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이므로, 질의하신 성적서의 적합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호 다목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시험성과대비표	자재공급원 승인 시험성과 대비표 작성 감리/CM승인 시험성적서 관리 품질검사대장작성

질문

자재공급원 승인 시 시험성과 대비표를 작성하여 감리 또는 CM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에 대한 품질검사대장 작성을 생략할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 제2항 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등에 따른 품질검사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행하거나,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대행한 경우 그 결과를 적는 문서입니다.

- 질의하신 자재공급원 승인은 자재를 현장에 납품하기 전 해당 건설공사에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적합한 자재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며, '자재공급원 승인 시 제출하는 시험성과대비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7조 제7항 및 제87조 제7항에 따라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첨부되는 서류이므로 별개의 문서임을 알려드리며,

- 또한, 같은 지침 별지 34호 서식(품질시험·검사대장)에도 시험성과표는 별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시험성과 대비표	자재공급원 승인 감리단 요구 사항 KS규정집 제출 시험성과 대비표 제출 제출 요구 근거

질문

자재공급원 승인 시 감리단이 KS 규정집 및 시험성과대비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자재공급원 승인 시 KS규정집 제출에 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 제57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1.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시험장비 미구비 플랜트 시험실 시험 현장시험 인정 여부 외부의뢰 시험

질문

아스콘 시험 장비를 현장에 구비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아스콘 플랜트 시험실에서 실시한 시험을 품질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외부 의뢰시험비가 고가인 경우 포설 시마다 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일하게 플랜트 시험 을 현장 실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고, 다만 현장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아스콘 업체에게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를 시행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아스콘에 관한 온도, 마샬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추출입도, 포설두께, 밀도 등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5항에 의해,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 강도시험 수행주체

질문

아스콘에 대한 강도시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아스콘에 관한 온도, 마셜 안정도,흐름 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 함유량, 추출 입도, 포설 두께, 밀도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 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현장 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같은 조 제5항에 의하여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3-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인터로킹 블록	기존 인터로킹 블록 철거 후 재활용 재활용 자재 30% 품질시험 실시 여부 신규 자재 기준적용 시험 대상 여부

질문

기존 인터로킹 블록을 철거 후 약 30%를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블록에 대해서도 신규 자재와 동일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 별표 2에 의하면,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재활용하는 경우에 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의 검토·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자재 관리 책임	EPC 공동수급 (분담 이행) A수급인(자재 공급) B수급인(시공) 자재공급vs시공 품질시험 책임 품질검사 책임

질문

EPC 공동수급(분담이행) 공사에서 A수급인이 자재를 공급하고 B수급인이 시공하는 경우, 해당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책임이 자재 공급자(A)에게 있는지, 또는 시공자(B)에게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동수급 계약방식의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조(발주자의 역할) 제6항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는공동수급체에 대한 품질관리계획 이행 요구사항을 공사계약문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3-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자재 인증	환경표지 인증/친환경 표지 인증 인증자재 실내공기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 시험생략 가능 여부

질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및 친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의 경우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4.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법령상 타법령에 따른 인증제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에 따른 품질시험 생략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검토권자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자재검수	자재검수 시 동영상

질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생산공장 점검 또는 자재검수 전경을 동영상으로 촬영된 자료로 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검토 및 확인 할 경우 입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하신 자재검수시 이 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할 경우,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자재검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2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자재검수	주요자재 검수 절차

질문

건설공사 주요자재 검수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 제1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 · 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 · 날인토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되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등 자재 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자재검수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급원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자재공급원	자재공급원 승인 유통업체 상호 변경 업체명 변경 전 성적서 시험성적서 기재 업체명 동일자재 여부 재승인 필요 여부

질문

자재 공급원 승인 후 유통업체 상호만 변경된 경우, 시험성적서 등 첨부서류에 변경 전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어도 동일 자재로 인정하여 재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시험성 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재공급원의 상호명이 변경되어 자재공급원 승인을 재요청 할 경우, 해당 공급원이 기 승인된 공급원과 동일한 업체라는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지침 상 공급원 상호변경 시의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급원 승인권자와 협의 하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타 현장 성적서	타 현장 시험성적서 품질시험 결과 대체 성적서 재사용 가능여부 현장별 시험 인정기준 「주택법」등 관계 법령

질문

타 현장에서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해당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결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재료로 보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확인 또는 봉인을 거치지 않은 타 현장의 시험성적서는 해당 건설현장에서 품질시험 성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는 타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재료 등에 한정되므로 타 현장에서 시험한결과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3 장 | 자재품질 관리

분류번호 13-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자재품질 관리	프리캐스트 바닥판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F 4726 품질검사 기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PC공법 적용 여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서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의 품질검사를 KS F 4726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적용하여야 할 품질시험기준은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업무지침 별표 2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지침 별표 2, 1. 공통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은, 제조회사별로 KS F 4726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공부위(지하주차장)에 따른 시험 제외여부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콘크리트

Q.1-45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가설공사 품질시험	CIP 콘크리트 시험

질문

CIP 공법 시공 시 타설되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에 관한 시험항목, 시험 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적용하여야 할 품질시험기준은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 업무지침 별표2에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굳은 콘크리트의 시험빈도를 배합이 다를 때 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1일 타설량마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콘크리트의 사용용도에 따른 품질검사 생략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가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동일하게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계량오차	레미콘 계량기록 확인

질문

레미콘 타설시 자동 계량 기록지를 통해 계량 오차 및 차량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생산자가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에 시중한 종류의 혼화재를 단위 결합 재량 대비 10퍼센트를 초과 사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별표 9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하면,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플라이애시의 치환율을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따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혼화재 사용량의 차이가 ±2% 범위인지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같은 고시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1.운반차 번호, 2.생산·도착시각 및 타설 완료시각, 3.규격 및 용적, 4.인수자, 5.그 밖의 지정사항 등을 확인 또는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공장점검	현장 반입 레미콘 품질검사 실시 출하 전 공장 확인 공장 직접 시험 확인 현장 배합 수정

질문

현장 반입된 레미콘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레미콘 출하 전에도 공장에 가서 직접시험을 확인 (현장배합 수정 사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사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불량자재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 전, 생산 또는 공급과정에서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 현장 배합설계 등에 대한 확인 포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수요자는 생산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품질관리 확인, 생산자 책임 및 의무 등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강도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건설공사의 레미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재공급계약서,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을 검토하여 확인 시기, 주기 등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공장점검	레미콘 공장 사전점검 구성재료 골재/시멘트/혼화재 현장 품질 시험 실시여부 별도시험 필요여부

질문

레미콘 공장 사전점검 시 골재 외에 시멘트 및 혼화재 등 구성재료에 대해서도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1. 공통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콘크리트용 골재, 순환골재, 플라이애시 등의 시험 종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현장 배치플랜트 등을 통해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경우 동 지침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현장에 원자재를 반입하지 않고,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레미콘 공장 자재공급원 승인 시 해당 공장이 승인된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시멘트, 혼화재 등에 대해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자재공급원의 적정 품질관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이후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동 지침 제38조에 의해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따라 레미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 강도 등의 시험을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공장점검	자재공급원 승인 사용실적 없음 공장 점검 반기1회 점검

질문

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에 따른 반기 1회 공장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검 생략 가능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14-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공장점검	민간공사 일반 아파트 공사 반기1회 정기 점검 적용 대상 여부

질문

ㅇ일반 아파트 공사(민간공사)에도「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4조 제2항에 따른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제3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점검 대상공사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임을 알려 드립니다.

- 질의하신 제33조 제1항은, 수요자가 레미콘 총 설계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의 총 설계량이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에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공장점검	반기 1회 정기점검 사전 점검 실시 점검 중복 여부 정기점검 추가 실시 여부

질문

레미콘·아스콘 공장에 대해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반기에 사전점검을 이미 실시한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별도로 추가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공장점검	민간공사 공장점검 대상 여부

질문

민간공사는 레미콘 공장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천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천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관급자재	레미콘 관급자재 자재공급원 승인 사전점검 절차 절차적용 여부 레미콘공장 정기점검

질문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재 공급원 승인 및 사전점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한 레미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아닌 건설 사업관리단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할 때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고, 사전점검 등의 결과를 통해 자재 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고시 제36조(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에 의해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용될 자재가 관급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사감독자는 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한 경우, 정기점검의 결과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고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4-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관급자재	조달청 위탁 구매 레미콘 생산 공장 점검 미승인 원자재 사용 자재공급원 승인 취소

질문

조달청 위탁구매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 결과 미승인 원자재 사용이 확인된 경우,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 또는 취소의 대상이 개별 공장 단위인지, 해당 공장을 보유한 법인(기업) 전체인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자는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재공급원은 자재를 공급하는 공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사용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동 지침 제36조에 의하여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이 지침에 준하여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제36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생산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	마이크로파법 흡수율 기준

질문

단위수량시험 중 마이크로파 법의 흡수율 설정값의 기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한국콘크리트학회 제 규격 KCI-RM101:2022에 의하면, 마이크로파법은 사용되는 전자기파의 투과 특성으로 인해 골재가 흡수한 수분의 약 66.6%까지 측정되며, 단위수량에서는 골재가 흡수한 물량은 제외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 보통 약 -10kg/L가 되므로, 정확한 흡수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을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레미콘사 품질시험	레미콘 전문 제조업자 품질검사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품질시험 및 검사 검사vs시험 차이

질문

법 제57조에 따라 레미콘 전문제조업자가 실시하는 품질검사와 법 제55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차이 및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레미콘 전문제조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에 " 법 제5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 · 부재는 다음 각 호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 · 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 · 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 · 부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레미콘 전문제조업자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여야 하므로, 공급자의 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 본문 및 제57조 제2항을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품질검사는 레미콘을 공급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이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가 아닙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 · 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국, 레미콘 전문제조업자는 레미콘을 건설공사현장에 공급하는 경우 영 제9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품질검사(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 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 · 부재)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합니다.

- 추가적으로 레미콘 품질시험 및 검사를 레미콘 전문제조업자에게 전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레미콘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8조 제4호와 제5호를 위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레미콘 전문제조업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아니므로,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사 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레미콘 전문제조업자는 법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접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하므로 영 제95조 제3항 2호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것임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레미콘사 품질시험	레미콘 반입시험 시공사 품질관리 기술인 제조사 직원 시험 수행 시험 수행 주체

질문

레미콘 반입시험을 시공사 품질관리기술인 및 감리원 입회하에 제조사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 수행 방식이 적정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레미콘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레미콘 사 품질 시험	현장반입 자재 시험 수요자 직접 실시 직접 수행 의미 해석 제3자 시험수행 가능 여부 관리감독자 입회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라는 규정이 시험을 수요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또는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제3자가 시험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레미콘 업체 품질팀이 현장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현장 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 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장에 반입된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는 자재공급원(레미콘 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건설사업자 등)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이 곤란한 경우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대행하게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레미콘 사 품질시험	품질시험 수행 주체 레미콘 업체 시험실 직원 시험 수행 가능 여부 시험장비 사용 레미콘 업체 시험 장비

질문

현장 반입 시 레미콘 품질시험을 레미콘업체 시험실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 또한 레미콘업체의 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레미콘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에는 시험시설(장비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 수립 대상공사는 영 제 91조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 사업자 등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승인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레미콘업체의 장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반발경도 시험	슈미트햄머 반발경도 시험

질문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슈미트 해머 반발 경도 시험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표준시방서인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5.5.7(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4)에서 비파괴시험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 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슈미트 해머에 의한 강도시험 결과는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결과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 비파괴시험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구조물 콘크리트의 품질을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초음파시험 등과 병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5.5.6(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에서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배관 모르타르	배관 모르타르 사용

질문

레미콘 압송 배관 모르타르 사용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KSC 14 20 10 일반콘크리트」 3.9 설비 및 장비 3.9.4 시공장비 3.9.4.3 콘크리트 펌프 (6)항에 의하면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 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질문

현장 배합 믹싱 (인력비빔) 방식으로 발주된 공사를 시공 중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또는 해상 B/P를 활용한 타설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현장 배치 플랜트의 설치조건)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 전문 제조업자가 생산·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하여 레미콘 소요량을전량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레미콘 전문 제조업자의 중소기업자 단체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는 이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트럭믹서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인 벽지지역·도서지역·교통체증지역 등

2. 압축강도가 40MPa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0mm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

3.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 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매스콘크리트·경량골재콘크리트·해양콘크리트·수중콘크리트·프리팩트 콘크리트·숏크리트·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

4.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의 장이 상기 각호의 경우 이외에 주변의 레미콘 전문 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없어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 따라서,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가능여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기존 설계(현장비빔)를 배치플랜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설계자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번호 14-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타 공구 BP 활용 가능 여부

질문

A공구에서 운영 중인 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된 레미콘을 B공구의 배치플랜트 설치 전까지 활용하여 시공할 수 있는지, 관련 적용 사례(선례)가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 제3항에 의하면, 현장배치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 사례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 상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콘크리트 제조 압축강도 시험 시험실시 의무 여부 기준 적용 여부

질문

현장에서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KCS 14 20 10 기준에 따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레미콘의 시험 빈도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건설공사에서 이 업무지침 별표2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업무지침 별표2의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에는 시험빈도를 레미콘은 KS F 4009, 레미콘이 아닌 콘크리트는 KCS 14 20 10 등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KCS 14 20 10에 따라 품질검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4-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배합설계	슬럼프 변경 (120 → 150) 강도 동일 배합설계 재실시 여부 배합 변경 기준 타현장 검증 배합 활용

질문

비KS 배합 사용 시 강도는 동일하고 슬럼프만 변경되는 경우(예: 25-24-120 →25-24-150)에도 배합설계를 별도로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타 현장에서 이미 검증된 배합을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 1.공통 나.철근콘크리트공사에 의하면,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배합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을 지정하지 아니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해당 현장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각 배합마다 별도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배합설계	배합설계 실시 기준 1개 골재 배합설계 추가 배합 설계 생략 가능 여부 골재 원산지 변경

질문

굵은골재 공급원 승인을 받은 여러 업체 중 1개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한 경우, 나머지 골재가 KS F 2527기준에 적합하면 추가 배합설계를 생략할 수 있는지, 또한 골재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배합설계를 반드시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의하면,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공급원의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배합설계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배합설계	배합설계 시기 및 입회

질문

배합설계 시기 및 배합설계 시 감리원 입회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 배합설계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자재 공급원의 공장 점검시기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해 수요자가 자재 공급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에 의하면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CS 14 20 01」 콘크리트 공사 일반 사항 1.6 품질 확보 (3)에 의하면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 설치, ③ 철근의 배치,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하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소량 레미콘 시험	소량 레미콘 시험

질문

레미콘 타설량이 소량인 경우에도 품질시험 및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에 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적용하여야 할 품질시험 기준은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업무지침 별표 2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지침 별표 2에는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의 시험빈도를 배합이 다를 때 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 마다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량 타설시 생략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소량 레미콘 시험	40m³ 미만 콘크리트 시험

질문

콘크리트 타설량이 40m³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및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판단으로 압축강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해 레미콘에 관한 슬럼프, 공기량,염화물이 온량, 강도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 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에 따른 제8조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압축강도는 KS F 2403, KS F 2405에 따라 배합이 다를 때 마다, 1일 타설량마다, KS F 4009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소량 타설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공은 관련법령과 당해공사 계약문서인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 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우리 부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다만, 「KDS 14 20 01 : 2022(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3.1 콘크리트, 3.1.5 평가와 사용승인에 의하면, 사용 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m³ 보다 적을 경우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송장관리	납품서(송장) 인수자 서명 품질관리기술인 서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확인 감리서명 필요 여부

질문

레미콘 반입 시 납품서(송장)의 인수자 서명을 품질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하는지,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벌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1. 운반차 번호, 2. 생산·도착시각 및 타설완료 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 밖에 지정사항 등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사감독자는 이 업무지침 제2조 제4호에 의해, 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납품서의 각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이 벌점부과 대상인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및 별표 8에 따라 해당 처분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시험비용 전가	시험비용 부담 레미콘 업체 부담 여부 시공사 부담 여부 비용 분담 주체 품질시험 비용 처리

질문

ㅇ사전점검 시 실시하는 골재시험의 비용을 레미콘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또는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업무지침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 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자재공급원(레미콘공장)이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기록내용 확인을 위하여 수요자(시공사 등)와 공사감독자가 합동으로 골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때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시험성적서 관리	콘크리트 시험보고서 시험보고서 작성·관리 레미콘 자재 검수 요청서 추가 작성 필요 여부

질문

레미콘 반입 시 납품서(송장)의 인수자 서명을 품질관리기술인이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여야 하는지,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벌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6항에 의하면, 품질시험·검사 성과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대장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품질시험·검사대장은 시험·검사항목, 시험기준과 결과, 결과판정, 시험·검사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의 확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8조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는 자재의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량 및 사유, 출고일과 출고량 등을 기록 관리하는 서류로 품질검사 대장과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2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콘크리트 공시체 시험 사진 촬영 필요

질문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시 공시체(예: 7일 3개, 28일 9개) 각각에 대해 시험사진을 모두 촬영하여야 하는지, 또는 대표 사진만으로 관리가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에 관한 슬럼프, 공기량,염화물이온량, 강도 등 시험항목, 시험 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적용하는 품질관리 방법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방규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업무지침에는 제38조 제5항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 같은조 제6항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성과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 품질검사대장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레미콘 공장 시험 건설현장 시험 시험실시 장소 시험수행 적정성

질문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레미콘 공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반드시 건설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레미콘 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7일 압축강도 시험 생략

질문

굳지 않은 콘크리트(레미콘)의 7일 압축강도 시험은 생략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에 관한 슬럼프, 공기량,염화물이온량(Cl-), 강도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 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일 압축강도 시험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건설공사에서 이 업무지침 별표 2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업무지침 별표 2의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압축강도 시험방법을 KS F 2403, KS F 2405, 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KS F 2405에 의하면, 시험을 하는 공시체의 재령은 7일, 28일, 90일 또는 그 중 하나로 하도록 되어있고, KS F 4009에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사시방서에 7일 강도에 대한 명기가 있거나 공사감독자 혹은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강도도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재령 28일을 설계 및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압축강도는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7일 강도 확인에 대한 강제규정 등은 없으나, 학술적으로 28일 강도의 추정 등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공휴일(추석 등) 기준일 준수 여부 시험일 변경 가능 여부 감리 입회 감리 입회 없이 시험

질문

레미콘 압축강도 시험일이 공휴일(예:추석)인 경우 시험을 7일→8~10일, 28일→29~30일로 지연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또는 기준일에 감리 입회 없이 시공사 단독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에 관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압축강도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 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휴일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 및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의 시방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와 수요자가 현장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사진촬영 등 식별가능한 정보로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4-3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염화물 시험	염화물 시험 횟수

질문

콘크리트 염화물 시험 횟수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 지침 별표 2에 따라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은 KS F 4009 부속서 A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시료측정 방법(염화물 측정지 1장 출력방법)은 동일지점을 1번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지점을 4회 측정 후 평균을 내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나, 분석 결과는 2회 측정의 평균값(2지점 측정의 평균 = 염화물 측정지 2장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염화물 시험	콘크리트 염화물 시험 시험결과 기록지 측정기 출력 원본 촬영본(사본) 사본 보관 가능 여부

질문

콘크리트 염화물 시험결과 기록지를 측정기 출력 원본 대신 촬영본(사본)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의 시험항목, 시험 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 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 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 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시방서에서는 염화물 시험결과 기록지를 사진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부의 코드화된 표준시방서인 KCS 10 10 10(공무행정요건)의 1.11(제품자료) 1.11.3 (6)항에서는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자재검수	민간공사 자재검수 요청서

질문

민간공사에 대한 레미콘 자재 검수 요청서 작성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4항에 의하면,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 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58조에 의하면 ①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 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의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38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골재	콘크리트용 골재 외부의뢰 시험 레미콘 공장별 시험 동일 골재 사용 시험1회 갈음 가능 여부

질문

콘크리트용 골재의 외부의뢰 시험을 레미콘 공장별로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또는 여러 레미콘 공장에서 동일한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1회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기록 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인 레미콘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해당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는 것으로, 여러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자재를 공급받을 경우, 레미콘 생산공장 별로 골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4-3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골재	골재 시험 시험 유효 기간(6개월/1년) 유효기간 기준 공사 재개

질문

레미콘 공장점검시 실시한 골재시험의 유효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 공사 재개를 위한 재점검시 골재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존 시험결과로 대체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 한지 요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기록 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레미콘 공장에 대한 사전점검 시에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 시 골재시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기나 빈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골재	레미콘 업체 시험실 감리 입회 시험수행 장소 시료 채취 시공사 현장 시험실

질문

레미콘 자재 공급원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을 레미콘업체 시험실에서 감리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는지,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시공사 현장 시험실에서 시험을 실시해도 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요자는 레미콘 총설 계량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점검 시 실시하는 골재 시험은 수요자(건설사업자 등)가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때 골재시험은 수요자(건설사업자 등)와 공사감독자가 합동으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승인된 시험시설에서 실시하거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3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골재	동일 생산자 골재 여러 레미콘 공장 골재 시험 실시 기준 공장별 시험 필요 여부 대표 시험 1회 가능 여부

질문

레미콘 공장 사전점검 시 여러 레미콘 공장에서 동일 생산자의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골재시험을 공장별로 각각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일 골재에 대해 대표시험 1회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기록 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은, 자재공급원인 레미콘 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시험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골재의 품질이 적정한지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는 것으로, 여러 자재공급원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을 경우, 자재공급원(레미콘 공장)별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4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골재	레미콘 업체 시험실 감리 입회 시험수행 장소 시료 채취 시공사 현장 시험실

질문

레미콘 구성 원자재 전부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골재는 시험을 실시하고 플라이애시·사용수 등 기타 자재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 또한 별도로 수행하여야 하며,

- 이에 따라 동일한 레미콘 업체를 사용하더라도 공장별, 골재시험을 각각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4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골재	레미콘 공장 자체 품질검사 자체 시험 결과 확인 공인시험기관 의뢰 시험 외부시험 필요 여부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7조 제4항에 따른 레미콘 골재 품질검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공장의 자체 품질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또는 별도로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골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87조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률,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 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공사와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가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 골재시험 기록내용 확인을 위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4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콘크리트용 골재	레미콘 구성 원자재 전부 시험 실시 여부 골재 품질시험 플라이 애시 사용수

질문

레미콘 구성 원자재 전부에 대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골재는 시험을 실시하고 플라이애시·사용수 등 기타 자재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에 의하면 콘크리트용 골재, 플라이애시 등 콘크리트 원재료의 시험 종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현장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는 등 골재 및 혼화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 지침 별표 2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합니다.

-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골재, 혼화재 등 콘크리트 원재료를 반입하지 않고,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제조된 레미콘을 현장에 반입하는 경우, 같은 지침 제32조(자재공급원 승인 등)에 따라 해당 자재공급원이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 한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레미콘에 대하여 시방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14-4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품질시험기준	동일 레미콘 2개동 타설 품질 시험 통합 물량기준 동별 시험 실시 여부 시험분리 기준

질문

동일 아파트 단지에서 동일한 레미콘을 2개 동에 타설하는 경우, 품질시험을 통합 물량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또는 타설 위치(동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레미콘에 관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강도 등에 대한 시험항목, 시험빈도(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품질확인 방법은 이 업무지침,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타설 위치별 시험 실시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 건설공사에서 이 업무지침 별표2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 업무지침 별표 2의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등에 의하면 시험빈도를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1일 타설량 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120세제곱미터 마다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타설 위치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4 장 | 콘크리트

분류번호 14-4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품질시험기준	레미콘 반입시험 시험 실시 위치 실제 타설 위치 현장내 지정 장소 시험장소 변경 가능 여부

질문

현장이 광범위한 경우 레미콘 반입시험을 실제 타설 위치가 아닌 현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5항에 의하면,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레미콘 시료 채취 위치의 적정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14-4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콘크리트	혼합타설	A/B사 레미콘 혼용 타설 가능 여부

질문

A, B사 레미콘을 구획된 구간에 혼합 타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8조 제7항에 의하면, 수요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 이음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거나 구획을 나누어 타설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하나의 구조물 또는 부위에 2개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한 레미콘을 혼용하여 타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의 혼용타설 가능여부는 승인권자인 책임기술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 장

가설 기자재

Q.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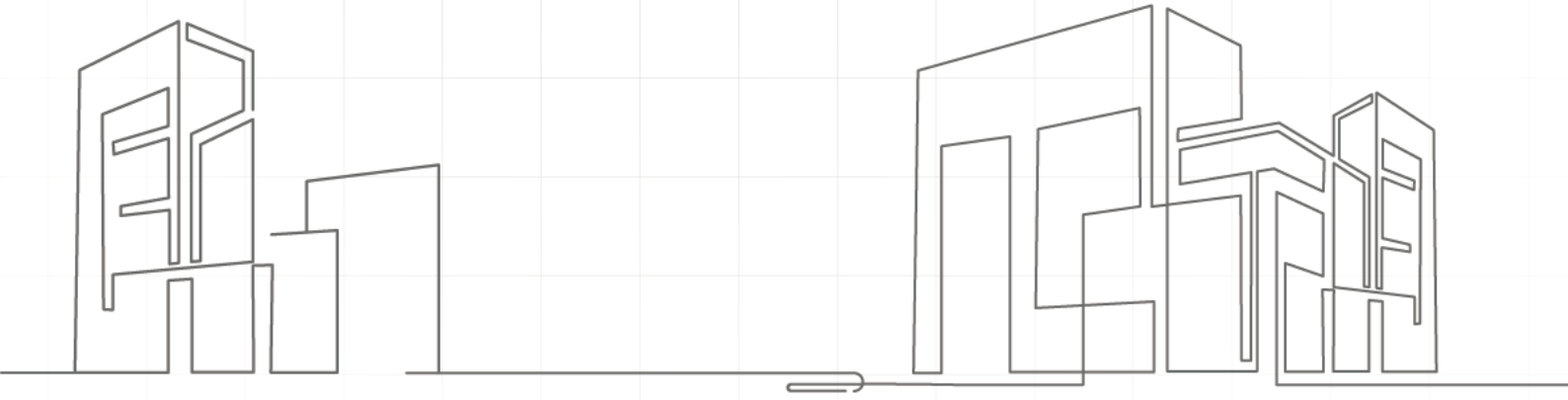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 기준 조정	제품 규격별 3개 시험 의뢰시험 기준 기준 완화 가능 여부 시험기준 조정 시험비용 과다

질문

가설기자재에 대해 제품 규격마다 3개씩 의뢰시험을 실시하도록 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시험 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 시험기준	제조사 시험성적서 제출 성적서 존재 현장 반입 자재 추가 의뢰 시험 실시 여부

질문

가설기자재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도,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 별도로 의뢰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의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경우가 아닌 제조사의 성적서(자재공급원 승인용, 밀시트 등)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 시험비	중고 가설기자재 외부의뢰 시험 시험비용 발생 설계 반영(신규 자재 손료) 비용 별도 지급 여부

질문

건설현장에서 중고 가설기자재에 대해 외부의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에 신규자재 손료로 반영되어 있을 때 해당 시험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1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진행할 때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비용이 누락된 경우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 시험시기	가설기자재 시험 시기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별표2에 따른 가설기자재 품질검사 시기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8.11 검사 및 시험,모니터링 관리절차에는 1.품질시험계획의 수립, 2.적절한 공정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 계획의 수립, 3.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책임자 역할 4.검증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품질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적정 품질검사 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 임대업체	임대 업체 타사 납품 가설 기자재 안전 인증 안전성 판단

질문

임대업체가 타사에서 납품된 가설기자재에 대해 안전인증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여 별도의 품질검사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 제9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현장에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가설기자재 재반입	외부 반출 후 재 반입 동일업체/동일규격 재사용자재 품질검사 재실시 여부 시험 재실시 필요 여부

질문

가설기자재(비계·동바리)를 외부로 반출하였다가 동일업체·동일규격 제품을 재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는 제품 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반출 및 재 반입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지실정 등에 따라 추가시험을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거푸집용 합판	건축물 내장재 미사용 높이 50cm이하 협소 구간 1회 사용 자재 KS기준 적용 여부

질문

건축물 내장재로 사용되지 않고, 높이 50cm 이하 협소구간에 1회 사용되는 거푸집용 합판도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해당 적용범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및 별표2에 의하면,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110)의 겉모양 및 치수, 휨강성 변형량, 도막 및 피복재 와 바탕합판의 접착성을 제품규격별로 시험하고, 필요시 함수율, 밀도, 접착성,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 상 자재의 사용용도 등에 따라 시험 생략 여부나 별도의 적용범위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 업무지침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거푸집용 합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3110) 강재 틀 합판 거푸집(KSF8006) 기준 미포함 품질 검사 실시 여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 기준이 신설되면서 강재 틀 합판 거푸집(KS F 8006)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1호라 목에서 정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은 KS F 3110에 따른 합판으로, 강재틀 합판 거푸집(KS F 8006)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재틀 합판 거푸집에 관해서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 등 설계도서의 시험기준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9

대분류	질의유형	세부 주제
가설기자재	자재관리	H형강 재사용

민원질문요약

흙막이용 H형강 신재 대신 중고재 사용 가능 여부

질문

터파기 공사 시 H형강을 신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재의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의하여 영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 신재의 경우 품질검사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령상 가설기자재는 신재만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로,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시방서 등에서 가설기자재 신재사용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공급자 의미	가설기자재 시험빈도 공급자 마다 기준 공급자 정의 납품업체 기준 여부 제조사 기준 여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가설기자재 시험빈도 기준 중 '공급자마다'의 의미가 납품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제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 1. 공통 라. 가설기자재는 시험빈도를 제조회사별 등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등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 공급원(임대 업체 등)이 다를 때마다 별도로 시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기준	길이별 시험 필요 여부 품질시험 실시 기준 대표시험 가능 여부 시험갈음 가능 여부

질문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예: 수직재 D60.5×3.2t)와 같이 동일 규격(재질·두께·단면)이면서 길이만 상이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도 길이별로 각각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일 규격 기준으로 대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에 의하면, 가설기자재의 품질시험 빈도를 제품 규격마다, 공급자마다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는 한국산업표준 KS F 8021에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의 경우 호칭 길이 마다 압축하중, 휨하중의 성능기준 값을 제시하고 있어 호칭길이 마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비계용 강관 등은 한국산업표준 KS F 8002에서 길이별 규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일 규격으로 보고 시험을 실시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구조로 인증 받은 비계용 강관은 강재의 재질이나 구조에 따라 두께가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특수구조로 인증 받은 비계용 강관은 두께마다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복공판	복공판 외관상태 확인 성능 확인 시험 방법 동하중 검사 200만회 피로시험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가설 기자재 중복 공판의 외관 상태 및 성능 확인을 위해 적용하여야 하는 시험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피로용접 검사(200만회 피로 시험)를 일반 복공판 품질시험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질의

민원 응답

ㅇ 복공판은 사용 용도에 따라 설계하중을 산정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 검토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공판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방법 및 품질기준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참고로, KDS 21 45 00(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 1.6.1(일반사항) (5)항에서는"복공판, 주형, 주형 지지보는 설계단면력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비틀림 등)에 대한 소요 강도, 강성 및 사용성(처짐, 피로, 진동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공판의 용접상태, 변형여부(뒤틀림, 비틀림, 휨 최대변형), 무게 감소량 등 공사시방서에 정하고 있는, 물리적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KDS 21 45 00(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설계기준) 1.6.1(일반사항) (5)항에서 복공판 사용성(처짐, 피로, 진동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장여건 및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수준에 따라 피로시험의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거푸집용 합판	시험 성적서 유효 기간

질문

가설기자재 공급원 승인 및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에 의하면, 시공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설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재공급원 승인용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2년후 동일 제조사 및 규격 가설기자재의 공급원 승인 여부는 자재공급원 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방서 등 설계도서,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원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건설공사에 품질이 확보된 자재를 반입하기 위해 적합한 공급원을 선정하고자 요청하는 서류로, 해당 성적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급원 승인권자인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복공판	시험빈도 기준 자재시험 결과 시험성적서 확보 시험결과 선행여부 시공진행 가능 여부 시험결과 제출 시점

질문

복공판 시험빈도 및 자재 시험결과가 나와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제1항에 따라 시공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지침 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1호(공통) 라목(가설기자재) "복공판"란에 외관상태 및 성능은 공사시방서의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제품규격별 200개 마다(단, 200개 미만은 1회), 공급자마다, 설치후 1년이내 마다 실시하여 국가건설기준 코드의 설계하중 기준에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설치후 1년이내 마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에도 200개마다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같은 지침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 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자재 · 부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 · 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 · 부재)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설계변경	품질시험 비용 계약 미반영 실정 보고 추가 지급 가능여부 발주자 비용지급

질문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비용이 계약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정보고를 통해 해당 비용을 발주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전가	시험 소요 자재 자재 비용 부담 시공사 부담 여부 자재 공급업체 부담 여부

질문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시 시험에 소요되는 자재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자재 공급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비는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전가	의뢰시험 시험비용 부담 원청사 협력 업체 비용부담 주체

질문

가설기자재 의뢰시험 시 시험비용을 원청사와 협력업체 중 어느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담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품질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하며,동법 시행규칙 별표 6, 2.품질관리비에 의해, 외부의뢰 시험은 품질시험비의 한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시험비용 누락	계약 미반영 비용 부담 주체 설계변경 반영 가능 여부 추가비용 인정 여부 공인시험기관 시험비 시료 채취 비용

질문

재사용 가설기자재 시험 비용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해당 비용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또한 공인시험 기관 시험비뿐만 아니라 시료채취 등 관련 비용까지 포함하여 반영 가능한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1호 다목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 및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해, 발주자는 제2호(품질관리비)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1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시험성적서 제출 성적서 유효 기간 유효기간 기준 존재 여부 1년이상 경과 성적서 성적서 인정 가능 여부

질문

가설기자재 공급원 승인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지, 1년 이상 경과된 성적서를 제출하여도 인정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87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 1. 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및 건설 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 성과, 2. 납품실적증명, 3. 시험 성과 대비표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상 1년 이내의 성적서 등 시험 성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자재공급원 성적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해당 건설공사의 자재'공급원을 선정할 때, 해당 자재공급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이므로, 질의하신 성적서의 적합여부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발주청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안전난간	강관 비계/조립형 비계·동바리 경미한 하중 용도 안전 난간 사용 품질시험 실시 여부 시험생략 가능 여부

질문

재사용 가설기자재(강관비계, 조립형 비계·동바리)를 안전 난간 등 경미한 하중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한 철거공사에 사용하는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도「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 라. 가설기자재에 의하면, 질의하신 강관비계용 부재,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는 사용 용도에 따른 시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농자재를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해 철거공사는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로 정하고 있어, 철거공사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워킹 타워	워킹 타워용 가설기자재 조립형 비계 부재 조립형 동바리 부재 해당 여부 판단 품질시험 대상 여부

질문

워킹 타워용 가설기자재가 조립형 비계 부재 또는 조립형 동바리 부재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품질시험비를 반영할 수 있는지, 또는 안전 관리비로 반영이 가능한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별표 2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가설기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업무지침 별표 2에는'워킹타워'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질의하신 '워킹타워'의 구성품 중 별표 2에 따른 자재 또는 해당공사의 시방서 등에 명기된 자재가 포함된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포함하여 해당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흙막이용 사용 신재/고재 구분 품질시험 실시 기준 규격별 통합 시험 가능 여부

질문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흙막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재와 고재를 구분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규격별로 통합하여 시험이 가능한지, 또한 시험 빈도 기준의 '공급자'가 납품업체 기준인지 제조사 기준인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1. 공통 아. 가설기자재에 의하면, "일반구조용 압연강재(흙막이용 자재로 제한)"의 경우, 치수,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의 시험을 제품 규격마다, 공급자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상 신재/재사용재에 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제2항 각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함), 질의하신 자재가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른 재료이면서 품질 저하나 재사용되지 않은 신재인 경우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1. 공통 라. 가설기자재는 시험빈도를 제조회사별 등으로 규정하지 않고,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등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는 자재공급원(임대업체 등)이 다를 때마다 별도로 시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류번호 15-2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시험빈도 기준 재사용재(고재) 시험빈도 동일 적용 여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가설기자재 중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의 시험빈도가 재사용재(고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라. 가설기자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는 KS D 3503에 따라 제품 규격마다, 공급자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상 신재·재사용재의 시험빈도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재사용 가설기자재	신재/재사용재 기준 동일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적용 기준 차이 자재 상태별 관리 기준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에 따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기준이 신재와 재사용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또는 구분 적용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

민원 응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는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업무지침상 가설기자재 시험대상을 신재, 재사용재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영 제9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서 신재(자재를 재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상기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재사용 가설기자재	품질검사 실시 의무 납품업체 시험 성적서 성적서 대체 가능 여부 품질검사 갈음 가능 여부 시험생략 가능 여부

질문

재사용 가설기자재에 대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로 품질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 사업자나 주택 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 하지 못하는 경우, 동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미리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시험성적서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재사용 가설기자재	터파기 공사 H형강 신재사용 기준 중고재 사용 가능 여부 설계·시방기준 자재 변경가능 여부

질문

터파기 공사 시 H형강을 신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하여 중고재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신재의 경우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에 의하여 영 제9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 신재의 경우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법령상 가설기자재는 신재만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로,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시방서 등에서 가설기자재 신재 사용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재사용 가설기자재	신재 기준 정의 현장 반입 후 사용 반복 사용 여부 고재 전환 기준 시험 실시 기준

질문

가설기자재 신재와 고재로 구분되는데, 신재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질의(현장에 반입된 후 계속 사용해도 신재인지? 한번 사용하면 고재로 분류되는지, 신재·고재 모두 반입 시 한번 만 시험하는지?, 매년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등은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함)

- 따라서,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현장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반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받은 후 이미 타 현장 등에서 사용된 자재를 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 현장에 인증을 받은 신제품이 반입되는 경우이더라도, 현장 내 다회사용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잭 서포트	잭서포트 품질성능 시험 시험대 상여부 가설 기자재 분류 시험적용 기준

질문

잭 서포트 반입 전 품질 성능시험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54조 제1항에"시공자, 공급원 승인권자, 공사감독자는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량자재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성실하게 품질관리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가설 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시험 빈도는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지침 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1호(공통), 라목(가설기자재)에는 '강재 파이프서포트', '강관비계용 부재(비계용 강관, 강관 조인트)','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트러스, 연결 조인트)',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일반구조용용접 경량 H형강(KS D 3558) *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일반구조용 각형강관(KS D 3568) *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에 사용하는 멍에 또는 장선용 자재로 제한', '열간압연강 널말뚝(KS D 4604)', '복공판',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KS F 3110)'을 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별 "강재 파이프서포트"란에 강재 파이프서포트(KS F 8001)만을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다른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잭서포트는 강재 파이프서포트의 일종으로서 동바리 역할을 하는 가설기자재이므로, 평누름에 의한 압축하중의 시험종목은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2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조립형 비계	조립형 비계/동바리 트러스 휨 하중 성능 40kN기준 기준 미달 구조 계산 안전성 확보

질문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의 트러스 휨 하중 성능이 40kN 이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조계산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5편 가설기자재 품질관리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가설기자재의 자재별(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시험 빈도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시험 결과 기준을 만족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3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타현장 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타현장 공인기관 성적서 성적서 제출 현장 반입 자재 추가 품질 시험 실시 여부 시험·검사의무

질문

가설기자재 생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타현장 공인기관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해 별도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치지 않은 시료로 시험한 품질검사성적서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성적서로 사용할 수 없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으로 발급된 성적서에는 공사명과 발주자, 시공자, 의뢰인 등을 기재하고 이 시험검사 결과는 당초 의뢰 시 제출된 시료에 대한 결과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류번호 15-3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파이프 서포트	토목공사 현장 파이프 서포트(V6) KS F 8001 기준 만족 방호장치안전 인증 미달

질문

토목공사 현장에 반입된 파이프 서포트(V6)가 KS F 8001 기준은 만족하나 방호장치 안전인증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자재의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및 별표 2, 1. 공통 아. 가설기자재에 의하면, 강재 파이프서 포트의 시험방법을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KS F 8001에서는 파이프서포트를 4종(최대사용 길이 4000±10mm)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 비고에 의하면 파이프서포트 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 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3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파이프서포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한국건설가설협회 시험 성적서 가설기자재(슈퍼파이프 서포트) 시험생략 가능 여부

질문

가설기자재 생산업체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타현장 공인기관 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해 별도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1.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 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에 따른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1. 공통 라. 가설기자재에 따르면 시험방법은 KS F 8001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 시험빈도는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최대사용 길이가 4000mm를 초과하는 제품과 알루미늄합금재 제품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의 시험방법 적용)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5 장 | 가설기자재

분류번호 15-3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가설기자재	합벽지지대	합벽지지대(솔저) 가설기자재 품질시험계획서 포함 여부 품질시험 실시 여부 시험대상 여부

질문

합벽지지대(솔저) 사용 시 해당 자재를 품질시험계획서에 포함하여 별도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적용 가능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기준을 검토하여 시험계획 작성 시 상기 기준을 검토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하신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 장

철강 품질관리

Q.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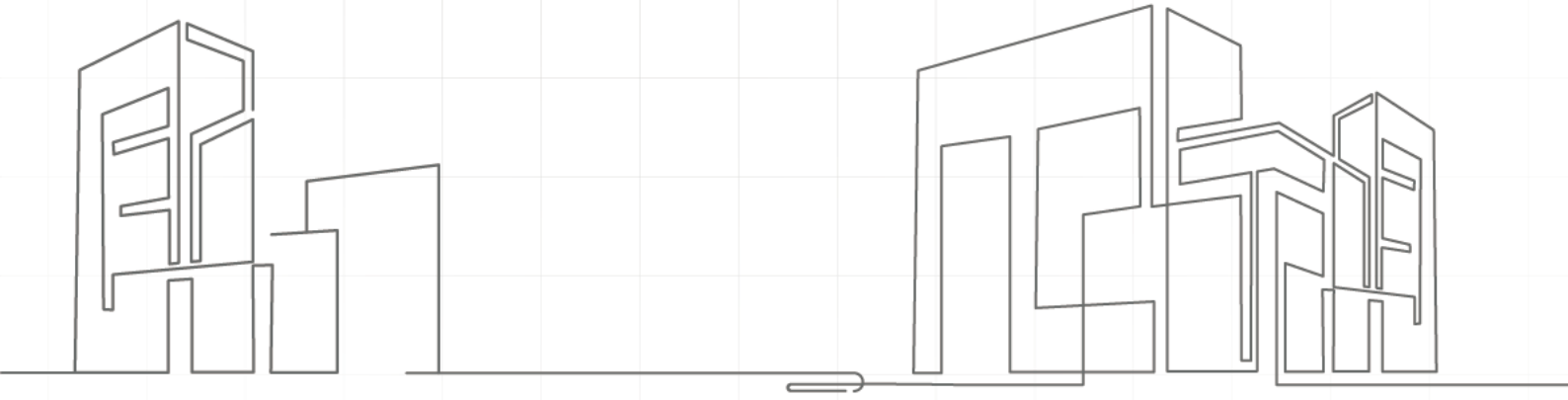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KS 인증제품	KS 인증 신재 철강재/철근 품질시험 실시 의무 시험생략 가능 여부

질문

KS 인증을 받은 신재(철강재, 철근 등)의 경우에도 건설 현장에서 별도의 품질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11호)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검사는 동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는 품질검사를 해야 함)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가설벤트	교량 가설공사 가설벤트 자재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품질시험 빈도 철강 구조물 공사 기준(다목)

질문

교량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가설벤트 자재(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품질시험 빈도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의 철강구조물공사 기준(다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가설기자재 기준(라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의에 의하면, 1호 다목에는 철강구조물 공사에서 사용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시험 빈도를 정하고 있고, 라목에는 가설기자재로 사용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시험 빈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재를 사용하는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 품질검사 빈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나, 라목의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는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이 업무지침 제9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별표 2의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적정 품질시험 빈도는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가스압접이음	철근 가스 압접 이음 품질시험 초음파 탐상 검사 일방향 인장 시험

질문

철근 가스압접이음 품질시험 시 '초음파탐상 검사'와 '일방향인장 시험'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 계획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여, 법 제55조 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1.공통 나.철근콘크리트공사에 의하면, 철근 가스압접 이음의 경우 1검사 로트에 대하여 30개소이상 초음파 탐사검사를 실시하고, 1검사 로트에 대하여 3개이상 일방향 인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업무지침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설공사에서 수행하는 품질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가스압접이음	고사이클 반복시험 철도/교량 구조물 일반 구조물 시험 적용 범위 필수 적용 여부

질문

철근 가스압접 이음 품질시험 중 KS B 0554에 따른 고사이클 반복시험을 철도 및 교량구조물이 아닌 일반 구조물에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해당 경우에는 일반목적 시험만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제8조 및 별표 2, 1. 공통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근이음(가스압접 이음)"에 의하면, 위치, 외관검사, 초음파 탐사 검사, 일방향인 잘 시험, 굽힘 시험, 저 사이클 및 고 사이클 반복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상 시험 대상을 특정 구조물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지침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고, 설계도서에 반영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을 수립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강재 시험	자재공급원 승인 H형강 품질기준 적용 H형강 말뚝

질문

자재공급원 승인 시 H형강의 품질기준을 KS D 3503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H형강 말뚝에 해당하는 경우 KS F 4603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 종목·시험 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H형강이 토공사 및 기초공사에서 사용하는 H형강 말뚝인 경우 1. 공통, 가.토공사 및 기초공사에 의해 H형강 말뚝(KS F 4603)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에서 사용하는 강재 또는 가설기자재인 경우 1. 공통, 다.철강구조물공사 또는 라.가설기자재에 의해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 3503)으로 품질검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강재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표준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판단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규정된 강재의 종류를 확인하여, 해당 강재에 따른 KS 표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강재 시험	강재 부식 관련 시험

질문

ㅇ건설 현장 H 빔 부식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KCS 14 20 11 철근 공사 3. 시공 3.1 철근 3.1.2 철근이 조립(1)에 의하면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강재 시험	용접구조용 강재 시험

질문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시험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에 따라 구조용 압연 강재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제품 규격별 50톤마다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 해당 시방서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 공사, 강재 및 자재 3. 시공 3.1 재료시험 및 보관 3.1.1 재료시험 및 용접성 시험에 의하면 "(1) 표 2.1-1, 표 2.1-2, 표 2.2-1, 표 2.3-1의 규격품에서 규격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 시험 및 용접성 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구조 건축물과 공작물 공사의 제작공장과 현장 공사자가 적용 한 두께에 대한 시공 실적이 없는 경우와 사용 경험이 없는 강종에 대해서는 용접성 시험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 특기 시방서 또는 구조설계도서에 규격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라도 특별하게 재료시험 또는 용접성 시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 결과를 제시하여 책임기술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6. 기계적 성질 6.2 샤르피 흡수에너지 비고에 의하면 "형강의 SM 275 A 및 SM 355 A는 주문자가 지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제2항에 의하면 "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 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 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기계식 이음	철근커플러 시험 실시 여부

질문

철근 커플러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시험 실시 여부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별표 2(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1호(공통) 나목(철근콘크리트 공사)"철근이음"란에 철근이음중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위치, 외관검사는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캘리퍼스 등에의 한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개소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인장응력(일방형 인장시험)은 KS D 0249의 방법으로 제조회사별 마다, 제품규격별 1000개소 1회(2개채취)마다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잔류변형량(정적내력시험)은 KS D 0249의 방법으로 제품 규격별, 제조회사별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침 제8조 제1항에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 · 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 · 방법 및 빈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발주자가 공사의 종류 · 규모 및 중요성,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에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 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및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장비 기준상 시험이 곤란한 경우 등은 발주자가 설계자와 협의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는 경우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시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에 대하여 철근 이음 중 기계적 이음은 커플러이므로, 상기된 기계적 이음(커플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통해 품질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한국산업규격에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커플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기계식 이음	원터치 방식 시험 적용 여부

질문

철근 기계식 이음 중 원터치 방식에 대해서도 나사식 이음과 동일하게 저사이클 반복시험을 포함한 품질시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9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커플러(기계적이음)에 대해 저사이클 반복시험을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적으로, 현행 업무지침 별표2 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철근이음에 의하면, 기계적 이음에 대해 나사식 및 원터치식 구분 없이 육안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위치, 외관검사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인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10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기계식 이음	제품규격 기준 철근 강종 철근 호칭

질문

가. 시험빈도에서 제품규격별이란 SD500, SD600, SD600S 등 철근 종류별로 시험을 실시하라는 것인지, 호칭별 D10, D13, D16, D19.. 로 시험을 실시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 KS D 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5 시험편 5.1에 의하면 이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편은 기계적 이음을 한 그대로를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아울러, 이 시험의 경우에는 철근 자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식이음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변형량이 0.3mm 초과시 이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철근 종류별 (SD 500, SD 600 ,SD 600S등) 및 호칭별(D10, D13, D16, D19등)로 각각 시험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1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자재검수	현장 반입 자재 검수 감독/감리원 확인 검수 의무 여부

질문

가공된 철근이 현장에 반입될 때 감독 또는 감리원의 자재검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 제4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1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특정 제강사 철근 타 제강사 철근 혼입 가공 업체 혼입 자재불일치 성능 동등성

질문

특정 제강사 철근을 구매하였으나 가공업체에서 타 제강사의 철근이 혼입되어 반입되는 경우, 성능이 동등하다면 자재공급원을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사업 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 지침」 제8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주요 기자재(철근 등)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자재 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이때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에는 해당 자재의 제조회사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지침 제88조 제7항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하신 건설공사에서 A사의 자재에 대해 자재공급원 승인을 득한 경우, A사의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6 장 | 철강 품질관리

분류번호 16-1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철강 품질관리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질문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품질시험 의뢰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o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 사업자와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한국산업표준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간 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1호나 목에 의하면,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의 경우, 제조회사별, 제품 규격별 50톤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시험빈도는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50톤마다 두가지 모두를 부합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 장

부실벌점

Q.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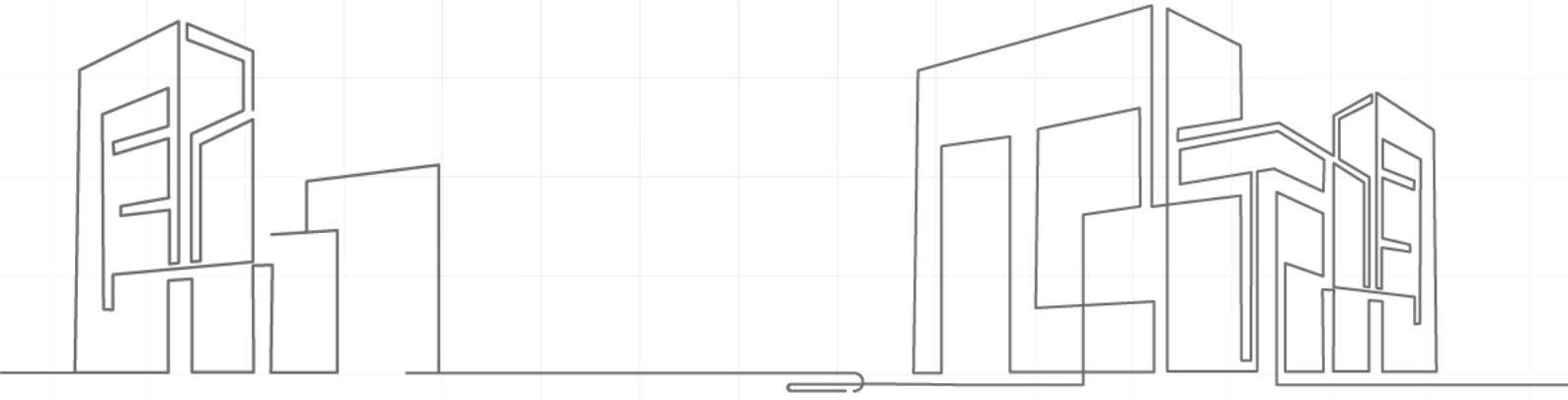

제17 장 | 부실벌점

분류번호 17-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부실벌점	공동이행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공종 수행책 임 부실 발생 벌점 사유

질문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공사에서, 부계약자 수행 공종의 부실로 벌점 사유 발생 시 벌점이 부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지, 또는 주계약자에게도 함께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할 때, 공동 이행방식일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 협정서에 선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다만,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었으면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상 공동계약 운용 요령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부적인 것은 처분기관에서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제17 장 | 부실벌점

분류번호 17-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부실 벌점	벌점 부과	주택법 감리자 건설기술 진흥 법 시행령 별표8 벌점 기준 벌점 부과 가능 여부

질문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에게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을 적용하여 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아닌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1. 건설 사업자, 2. 주택 건설등록업자, 3. 건설 기술용역 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 기술인 또는 건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 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조사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질의하신 주택법 감리업무 수행자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 따른 벌점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처분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용하는 행정처분으로서, 질의상의 부실이 건설기술진흥법 이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2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7 장 | 부실벌점

분류번호 17-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부실벌점	벌점 측정	교육청 발주청 지위 점검수행 여부 행정 권한 감독 권한

질문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발주청의 지위로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제54 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였으면 발주청으로서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17 장 | 부실벌점

분류번호 17-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부실 벌점	하자 관리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하자·부실 보수 벌점 부과 대상 여부 하자보증기간 책임 주체 부실 공사 정의 도면·시방 불일치

질문

준공 후 하자 보증 기간 내 하자·부실을 보수한 경우에도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지 및 하자보증기간 내·외에 발생한 하자·부실에 대해 책임 주체, 부실 공사의 정의 (도면·시방 불일치 여부 포함), 처벌 기준 및 절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ㅇ건설기술진흥법령상에는 준공 및 하자보증기간 등에 따라 벌점 부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준공 및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가 가능한것으로 부실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령 상 부실 공사의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 발주청과 인 · 허가기관의 장은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 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 장

CSI (품질)

Q.1-10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1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검토기간 연장	현장 품질시험 결과 CSI 등록 품질관리 책임자 부재 휴가/현장 이탈승인 검토 기한(7일이내) 기한연장 가능 여부

질문

현장품질시험 결과의 CSI 등록 시 품질관리책임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하여 발주처의 현장이탈 승인을 받은 경우, 품질관리책임자의 검토기한(7일 이내)에 휴가기간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시공자는 현장에서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를 완료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책임품질관리자의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현 법령 및 지침, CSI 상 책임품질관리자의 개인적인 휴가, 출장 또는 발주청의 '현장이탈 승인'을 근거로 하여 입력 및 검토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예외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책임품질관리자의 휴가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CSI 등록 및 검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2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이중 서류 작성	CSI 시스템 등록 품질시험 성적서 품질검사대장 관리 감리단 추가 요구 별도문서작성 (보고서/수기대장) 추가 제출 의무 여부

질문

CSI 시스템에 품질시험 성적서 및 품질검사대장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에도, 감리단이 동일 내용을 별도 문서(보고서, 수기대장 등)로 추가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것이 법령상 의무사항인지 질의

민원 응답

ㅇ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2조(정의) 및 제59조(수명사항)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서면(공문)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에 의거한 CSI 품질검사 등록과 관련하여 승인 과정에서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품질검사 실시대장에서 출력할 수 있어, 이는 지침에서 강조하는 '서면 보고 및 기록 유지'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확인을 위해 공문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업무 수행을 위한'수단'일 뿐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관련 서류 제출 관련하여 CSI 출력물 등 간소화 및 생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3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자체품질시험 입력 기한	시험검사자 제출 완료 구분 번호 생성 종합정보망 입력 완료여부 증빙자료 확보 여부 검토자 검토·서명

질문

CSI 시스템에서 시험검사자가 제출 완료하여 구분번호가 생성된 상태를 「건설기술진흥법」상 '종합정보망 입력 완료' 및 '증빙자료 확보'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검토자의 검토·서명 완료까지 요구하는 CSI 공지사항이 법령과 상충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의 구분번호 생성은 데이터 식별을 위해 시험·검사자 제출처리 시 부여되도록 반영되어 있으며 검토자의 확인 절차가 등록된 시점을 시험·검사 결과를 입력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토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자료로는 인정받기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입력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건설 사업자(시공사)'로 명시되어 있지만 확인자(감리)의 확인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품질검사 실시대장 열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검토자(책임 품질관리자)가 절차를 완료하여'제출'된 상태를 법령상 입력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4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제출기한 초과	최초 제출 완료 단순 수정(오타등) 제출 완료일 변경 7일 초과 지연제출 여부 벌점대상 여부

질문

품질시험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최초 등록·제출한 이후 단순 수정(오타 등)으로 제출완료일이 변경되어 7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건설기술진흥법」상 지연 제출로 보아 벌점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자체시험 결과는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를 완료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책임품질관리자의 확인 및 검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현재 CSI는 최초 등록 및 승인 시점에 대한 로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건이라면 사후 수정으로 인해 최종 검토일이 변경되더라도 기한 미준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실질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국토교통부 등 점검 기관에 있으며, 본 운영기관에는 처분을 결정하거나 면제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CSI 내 이력을 통해 기한 내 등록 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나, 최종적인 법적 판단 및 처분 여부는 해당 권한을 가진 담당기관의 소관임을 안내드립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5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품질검사 대행의뢰 여부	품질시험 해당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CSI등록의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품질시험계획 포함여부

질문

차선도색 재귀반사성능 시험이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시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시험을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특히 품질시험계획에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각각 등록 의무가 있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이라 한다.)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검사 대행의뢰는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과는 관계없이 CSI를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6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품질관리 기준	인허가 분리 (1BL/2BL) KISCON사업 정보 통합운영 CSI건설품질 시스템 시험실적 관리 품질관리 인력 관리 통합관리 가능 여부

질문

인허가가 분리된 1BL·2BL 현장을 KISCON상 하나의 사업정보로 운영하는 경우 CSI 건설품질시스템에서도 시험실적 및 품질관리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지, 또는 블록별로 별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분할 도급 현장으로 KISCON 등록 정보는 하나이나, 시공사별로 품질시험계획을 별도 수립한 경우의 시스템 관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시험)계획은 수립 대상별로 각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공사가 다르거나 품질시험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경우, 시스템상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KISCON 연동을 통한 사업정보 1건 등록, 사업정보 등록 시 '자체공사' 항목을 체크한 후 공사명을 직접 입력하여 사업정보 1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각각의 사업정보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진행해야하는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7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현장서류 보관	CSI 시스템 품질검사실시대장 출력본사용 현장서류보관 전자문서vs지류문서

질문

CSI에 있는 품질검사실시대장을 출력해서 현장서류보관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에 의거 [제42호 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0조에 의거하여 해당 규정을 종합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CSI에서 절차를 통해 등록된 품질검사 실시대장의 출력물을 현장서류 보관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8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현장양생공시체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 품질시험기준 미명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CSI등록의무 시험결과 등록 여부

질문

표준시방서(KCS 14 20 10)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2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시험결과를 CSI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에서 [별표2]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현장양생 공시체 제작 및 시험방법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0에서 정하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장양생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은 품질시험계획서에 반영하고, 시험 실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8 장 | CSI(품질)

분류번호 18-9

대분류	질의유형	핵심 키워드
CSI(품질)	현장양생공시체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결과 CSI 전자등록 전자 서명 품질시험 자료 관리 전자vs지류 보관

질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보고서 작성 시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CSI에 전자적으로 등록·서명된 품질시험자료를 별도로 지류로 출력·보관하여야 하는지 질의

민원 응답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기준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에서 [별표2]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공종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및 시험방법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0:2024에서 정하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장양생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은 품질시험계획서에 반영하고, 시험 실시 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에 등록·관리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제3항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 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 제15항에 따른 CSI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91조제4항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품질검사의 종목·기준·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
2.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성명·서명, 품질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
3. 품질검사의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라 CSI에 등재된 통합 품질시험 검사대장으로 기록·관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필요에 의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 · 회신 사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로 접수된 주요 민원 회신사례를 발췌한 것으로써, **본 사례집의 내용은 건설품질관련 제도**와 관련하여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례집은 비매품 간행물로써, 국토교통부의 승인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리행위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국토교통부
2026년 건설공사 품질관리 민원사례집

총괄 및 기획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편집 : 큐에스이 이앤씨㈜ 정진우, 여의진
인쇄일 : 2026년 7월
발행일 : 2026년 7월
발행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주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제작 : 큐에스이 이앤씨(주) (070-4001-6845)
본 사례집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공지사항
민원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6

건설공사 품질관리 민원사례집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